

발 간 등 록 번 호

11-1430000-100011-01



미래전략 연구

아프리카 지역 지식재산 협력에 관한 연구

Exploration on Cooperation with African Region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2024. 12.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한국지식재산연구원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미래전략 연구

아프리카 지역 지식재산 협력에 관한 연구

- IP-ODA 발굴 및 지식재산 지역학 기초연구 -

Intellectual Property Prospects

Exploration on Cooperation with African Region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 Basic Research on the IP-ODA Model and Intellectual Property
Infrastructure in the African Region -

2024. 12.

제 출 문

특허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아프리카 지역 지식재산 협력에 관한 연구 - IP-ODA 발굴 및 지식재산 지역학 기초연구 -” 기본연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 구 기 간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연 구 책 임 자 : 문병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책임연구원)

참 여 연 구 자 : 정민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전문연구원)

이재현 (제주대학교/교수)



요 약

제1장 연구의 개요

- (연구배경) 아프리카는 풍부한 자원과 내수시장, 노동인구 증가 등 잠재력이 높은 신흥시장이며, 유럽과 중국은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 중
 - 아프리카의 경제성장률은 2000년대에 연평균 약 5%를 기록했고 여전히 3~4%를 유지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인구는 2023년에 이미 중국과 인도를 추월해 2050년에는 약 25억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유럽은 이미 2000년부터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통해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대륙 간 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고, 중국은 대규모 원조를 통해 아프리카와 관계를 강화하면서 2009년 이래 아프리카 최대 교역상대국으로 부상
 - 우리나라도 2024년 6월 서울에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최초 개최해 본격적인 아프리카 경협에 나섰으며, 2030년까지 對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ODA)를 100억 불, 수출금융을 140억 불로 확대하기로 결정
- (연구목적)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아프리카 국가와 체결한 FTA가 없고, 아프리카는 산업 인프라와 법제도가 미흡해 사업 환경 불확실성이 큰 실정
 - 열악한 지식재산 인프라는 아프리카 기업 성장을 방해하고 우리 기업의 투자·진출에도 걸림돌이 되는데, 아프리카와 동반성장, 지속가능한 경협을 이루려면 현지 지식재산 인프라를 개선하려는 공감과 협력이 필요
 - 이에, 아프리카와의 무역협정 체결, 경제협력 확대, IP-ODA 등을 위한 선행연구로서 아프리카 지식재산 인프라에 대해 조사하고 현지에 적절한 IP-ODA 사업모델을 검토할 필요성 존재

- (아프리카 지역 지식재산 환경 개황) 아프리카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아프리카지역 지식재산기구(ARIPO),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아프리카지식재산기구(OAPI)가 각각 1976년과 1977년에 출범

아프리카 지역 지식재산 기구별 가맹국 현황 (2024년 3월 기준)

아프리카 지역 지식재산 기구	가맹국 현황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기구 (ARIPO) (22)	보츠와나, 카보베르데, 가나, 케냐, 에스와티니, 레소토, 라이베리아, 말라위, 모리셔스, 모잠비크, 나미비아, 르완다, 상투메 프린시페, 세이셸,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수단, 탄자니아, 감비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아프리카지식재산기구 (OAPI) (17)	베냉,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코모로, 콩고, 코트디부아르, 가봉, 기니, 기니비사우, 적도기니, 말리, 모리타니, 니제르, 세네갈, 차드, 토고

- (특허 활동 성향) 아프리카는 전 세계 특허출원에서 비중이 1% 미만으로 매우 낮지만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약 5% 성장률을 기록했고 내국인 특허출원 비중도 2022년 약 19.3%를 기록해 점진적 증가 추세

전 세계 지역별 특허출원 건수

지 역	특허출원 건수		특허출원 내국인 비중		전 세계 특허출원 비중		평균 성장률 2012~2022
	2012	2022	2012	2022	2012	2022	
아프리카	14,700	24,300	15.6%	19.3%	0.6%	0.7%	5.2%
아시아	1,321,300	2,349,200	76.7%	82.7%	56.1%	67.9%	5.9%
유럽	345,800	355,100	63.2%	54.7%	14.7%	10.3%	0.3%
라틴아메리카	63,100	57,000	12.2%	13.5%	2.7%	1.6%	-1.0%
북아메리카	578,100	632,400	47.3%	40.6%	24.5%	18.3%	0.9%
오세아니아	33,400	39,400	11.9%	6.9%	1.4%	1.1%	1.6%
전 세계	2,356,500	3,457,400	64.5%	69.7%	100.0%	100.0%	3.9%

- (상표 활동 성향) 아프리카는 전 세계 상표출원에서 비중이 2% 미만으로 매우 낮지만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약 4% 성장률을 기록했고 내국인의 상표출원 비중도 2022년 약 46.1%를 기록하는 등 높은 수준

- (산업디자인 활동 성향) 아프리카는 전 세계 디자인 출원 중 비중이 1%에 불과해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내국인의 산업디자인 출원 비중이 2022년 약 64.7%를 기록해 높은 수준
 - (특별강제실시권제도 검토) TRIPS 협정 개정의정서를 현재 126개 회원국이 채택하였고 38개 회원국이 아직 채택하지 않음
-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기구, ARIPO)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기구 창설에 관한 루사카 협정이 1976년 12월 채택되어 ARIPO 설립, 1978년 2월 정식 발효
- (기구 관할권) 2024년 5월 현재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기구에는 총 22개 영어권 아프리카 국가들이 속해 있으며, 동 기구는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실무를 위해 하라레의 정서, 반출의정서 등 조약을 채택·적용
 - (기구 구성·운영)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기구는 각료이사회, 행정이사회, 사무국, 행정이사회 설치 보조기관으로 구성되며, 각료이사회는 기구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기구 방향을 설정하고 기구 활동 관련 조치를 결정
 - (특허절차)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기구는 하라레의정서에 의거해 당사국을 대신해 특허, 실용신안, 산업디자인을 허여·등록하는데, ARIPO로부터 허여 받은 특허는 지정된 당사국에서 해당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허여된 특허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며 출원서 접수일로부터 20년 동안 유효
- (아프리카지식재산기구, OAPI) 1962년 리브르빌 협정 이후 1977년 3월에 아프리카지식재산권기구 창설에 관한 방기협정이 채택되어 OAPI 설립
- (기구 역할) 아프리카지식재산기구는 회원국의 국가 지식재산 관할청 역할을 수행하며, 파리협약 상 중앙사무소, 특허협력조약(PCT) 상 수리관청 및 지정관청 역할 등을 수행
 - (기구 관할권) 2024년 현재 아프리카지식재산기구에는 총 17개 프랑스어 아프리카 국가들이 속해 있으며, 동 기구는 특허, 상표, 산업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 실무를 위해 방기협정에 속한 여러 부속서를 채택·적용

- (우리나라 IP-ODA 현황) 우리나라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공적개발원조를 위한 최상위 국가 종합전략으로 5년마다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며, 사업 규모는 2024년 현재 약 6조 2,630억 원
 - 하지만 특허청이 직접 운영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은 연 20억 원 수준에 불과하며,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공적개발원조 예산에서 지식재산 공적개발원조(IP-ODA)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0.12%에 불과
 - 즉, 지식재산 주무부처인 특허청이 직접 추진하는 공적개발원조의 규모는 2022년 22.9억 원, 2023년 26.5억 원에 그치고, 세계지식재산기구 분담금을 제외한 양자 차원의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2023년 기준 총 26.3억 원
- (우리나라 IP-ODA 개선방향) 수원국에 대한 맞춤형 사업의 설계·추진 필요
 - 낮은 정책 우선순위와 예산으로 인해 IP-ODA는 대부분 수원국의 일시적 수요를 반영해 단발성으로 추진되는데, 수원국 경제발전 수준, 특허활동 성향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맞춤형 사업이 설계·추진될 필요성 존재
 - 또한, 여러 기관이 다발성으로 여러 사업을 수행하는 종래 체계를 개선해 IP-ODA를 위한 컨트롤타워를 설정하여 사업 간 중복성을 회피하면서 수원국과의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유지할 필요성 존재
 - 수원국들은 대부분 경제·법률·산업·교육 등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IP-ODA 자체만으로 산업 발전을 이끌 유일한 요인이 될 수 없으므로, 수원국 경제발전 계획을 고려해 주력 산업 등과 연계한 사업의 추진 필요
 - 한편,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는 아시아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데, 2023년 정부가 발표한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 등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지역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對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할 필요성 존재

우리나라의 국가별 공적개발원조 규모

(증여등가액 기준, 단위 : 백만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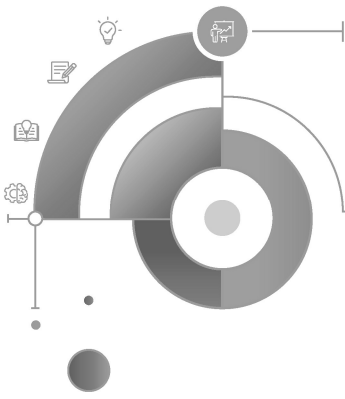
순	2021년		2022년		2023년(잠정)	
1	방글라데시	212.17백만 불	에티오피아	124.99백만 불	방글라데시	174.87백만 불
2	필리핀	130.41백만 불	캄보디아	124.53백만 불	베트남	110.64백만 불
3	캄보디아	113.66백만 불	베트남	109.83백만 불	캄보디아	108.20백만 불
4	베트남	97.65백만 불	필리핀	101.58백만 불	인도네시아	104.87백만 불
5	에티오피아	82.94백만 불	방글라데시	87.89백만 불	필리핀	91.55백만 불
6	이집트	64.39백만 불	우크라이나	78.51백만 불	에티오피아	78.29백만 불
7	라오스	62.26백만 불	라오스	74.89백만 불	라오스	66.25백만 불
8	인도네시아	62.13백만 불	인도네시아	68.60백만 불	몽골	63.36백만 불
9	콜롬비아	60.77백만 불	몽골	64.95백만 불	엘살바도르	53.16백만 불
10	탄자니아	54.72백만 불	탄자니아	58.89백만 불	우크라이나	53.00백만 불

제4장 결론

- (아프리카 경험 확대를 위한 IP-ODA 역할) 아프리카는 인프라와 법제도가 미흡해 사업 불확실성이 크며, 특히 기술과 브랜드가 비즈니스 성패를 결정하는 시대에 지식재산 인프라도 매우 열악한 실정
 - 따라서 아프리카와 동반성장, 지속가능한 경험을 위해선 현지 지식재산 인프라를 개선하려는 공감·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아프리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IP-ODA의 설계와 연속성 있는 추진이 필요
 - 특히 아프리카 IP-ODA는 궁극적으로 지식재산을 통해 수원국의 경제발전을 견인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지식재산 격차(disparity)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
- (아프리카 IP-ODA 사업모델 제안) 아프리카 경제발전 수준을 고려해 볼 때, 지식재산 인식 제고, 법제도 개선, 심사관 등 교육, 지식재산 서비스 인프라, 정보시스템 구축 등 순으로 ODA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키워드

아프리카, 지식재산 공적개발원조, ARIPO, OAPI, 하라레의정서



CONTENTS

요약문	i
-----------	---

제1장 연구의 개요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3
-----------------------	---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5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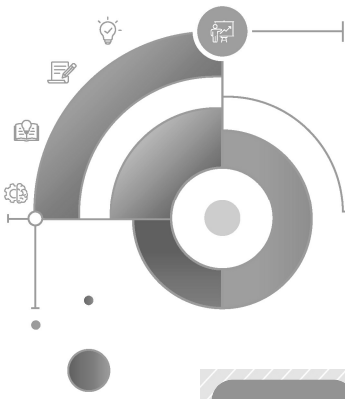
제2장 아프리카에 대한 지식재산 지역학 연구 9

제1절 아프리카 지역 지식재산 환경 개황	11
------------------------------	----

1. 아프리카 지역의 지식재산 기구 창설 11
2. 아프리카 지역의 지식재산 현황 13
 - (1) 특허출원·등록 현황 13
 - (2) 상표출원·등록 현황 15
 - (3) 산업디자인 출원 현황 16
 - (4) 식물신품종 출원 현황 17

제2절 아프리카 지식재산 지역레짐	19
--------------------------	----

1.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기구(ARIPO) 19
 - (1) ARIPO 기구 구성 20
 - (2) ARIPO 목적 및 관리조약 21
 - (3) ARIPO 하라레 의정서(Harare Protocol) 주요내용 23
2. 아프리카지식재산기구(OAPI) 33
 - (1) OAPI 기본원칙 및 기구 구성 34
 - (2) OAPI 방기협정(Bangui Agreement) 부속서 주요내용 35



제3장

아프리카 IP-ODA 사업 발굴

37

제1절 IP-ODA의 정의와 우리나라 IP-ODA 현황

39

1. 공적개발원조(ODA)의 개념

41

2. 우리나라 지식재산 공적개발원조(IP-ODA) 현황

44

제2절 우리나라 IP-ODA의 개선방향

49

1. 우리나라 IP-ODA의 문제점

49

(1) 낮은 정책 우선순위와 예산 규모

49

(2) 연속성 및 중장기 방향성 부재

51

(3) 종합적·체계적 사업모델의 부재

53

(4) 특정 지역에 대한 지원 편중

54

2. 우리나라 IP-ODA 개선방향

56

(1) 수원국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

57

(2) 수원국 지식재산 활동 성향에 따른 맞춤형 사업 실시

59

제3절 우리나라의 對아프리카 IP-ODA 사업모델

60

1. 아프리카 권역별 지식재산 활동 성향 분석

60

2. 수원국과의 지속가능한 파트너십 구축

66

3. 아프리카 지역별·국가별 맞춤형 IP-ODA 모델 시행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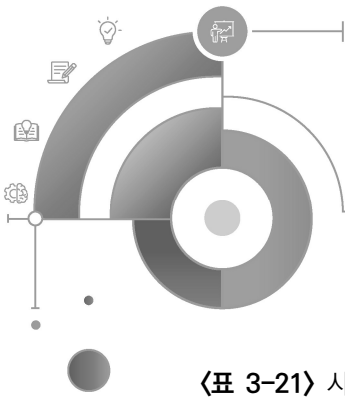
제4장

결론

77

표목차

〈표 1-1〉 아프리카 지역 지식재산 기구 현황	5
〈표 1-2〉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기구 관리조약 현황 (2024년 5월 30일 기준)	6
〈표 2-1〉 아프리카 권역별 국가 현황	11
〈표 2-2〉 아프리카 지역 지식재산 기구별 가맹국 현황 (2024년 3월 기준)	12
〈표 2-3〉 전 세계 지역별 특허출원 건수	14
〈표 2-4〉 전 세계 지역별 특허등록 건수	15
〈표 2-5〉 전 세계 지역별 상표출원 건수	16
〈표 2-6〉 전 세계 지역별 상표등록 건수	16
〈표 2-7〉 전 세계 지역별 산업디자인 출원 건수	17
〈표 2-8〉 전 세계 지역별 식물신품종 출원 건수	18
〈표 2-9〉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기구 관리조약 현황 (2024년 5월 30일 기준)	22
〈표 2-10〉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기구 하라레 의정서의 구성 (2022년 11월 25일 개정)	24
〈표 2-11〉 ARIPO 하라레 의정서의 특허 수수료	27
〈표 2-12〉 ARIPO 하라레 의정서의 실용신안 수수료	30
〈표 2-13〉 ARIPO 하라레 의정서의 산업디자인 수수료	32
〈표 2-14〉 1977년 방기협정(Bangui Agreement)의 본문 구성	33
〈표 2-15〉 1977년 방기협정(Bangui Agreement) 부속서 I 의 구성	35
〈표 2-16〉 방기협정 상 특허 강제실시의 요건	36
〈표 3-1〉 국가 소득 수준별 특허출원 건수	40
〈표 3-2〉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DAC)의 공적개발원조 개념	41
〈표 3-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정한 공적개발원조 수원국 현황	42
〈표 3-4〉 경제협력개발기구 공적개발원조 수원국으로 지정된 아프리카 국가	43
〈표 3-5〉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전략목표 및 중점과제	44
〈표 3-6〉 지난 10년 간 우리나라 지식재산 공적개발원조(IP-ODA) 현황	45
〈표 3-7〉 지난 10년 간 지식재산 공적개발원조 중 프로젝트 사업 현황	46
〈표 3-8〉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중 프로젝트 사업 사례	46
〈표 3-9〉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중 개발컨설팅 사업 사례	47
〈표 3-10〉 특허청 지식재산 나눔 사업의 자체평가 보고서 요약	51
〈표 3-11〉 최근 3년간 특허청 지식재산 나눔 사업의 세부사업 현황	52
〈표 3-12〉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국 현황	54
〈표 3-13〉 우리나라의 국가별 공적개발원조 규모	56
〈표 3-14〉 산업 발전 단계별 수원국의 지식재산 환경 수준 진단	57
〈표 3-15〉 산업 발전 단계별 지식재산 공적개발원조(IP-ODA) 사업내용	58
〈표 3-16〉 지식재산 활동 성향 등에 따른 수원국 분류 및 IP-ODA 사업내용	59
〈표 3-17〉 북부아프리카 지역 국가에서 접수된 특허 출원 건수	60
〈표 3-18〉 사하라 이남 서부아프리카 지역 국가에서 접수된 특허 출원 건수	61
〈표 3-19〉 아프리카지식재산기구(OAPI)에서 접수된 특허 출원 건수	62
〈표 3-20〉 사하라 이남 중부아프리카 지역 국가에서 접수된 특허 출원 건수	62



〈표 3-21〉 사하라 이남 동부아프리카 지역 국가에서 접수된 특허 출원 건수	63
〈표 3-22〉 사하라 이남 남부아프리카 지역 국가에서 접수된 특허 출원 건수	65
〈표 3-23〉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의 특허 출원 성향 구분	65
〈표 3-24〉 북부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식재산 관할당국 및 산업재산권 법률 현황	68
〈표 3-25〉 사하라 이남 남부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식재산 관할당국 및 산업재산권 법률 현황 ...	70
〈표 3-26〉 특허 출원 성향에 따른 아프리카 지역 국가별 IP-ODA 모델(안)	71
〈표 3-27〉 對아프리카 지식재산 공적개발원조(IP-ODA) 사업 모듈 구성(안)	73

그림목차

[그림 2-1] 아프리카 지역 지식재산 기구별 가맹국 현황 (2024년 3월 기준)	13
[그림 2-2] 전 세계 지역별 특허출원 비중	14
[그림 2-3] 전 세계 지역별 상표출원 비중	15
[그림 2-4] 전 세계 지역별 산업디자인 출원 비중	17
[그림 2-5] 전 세계 지역별 식물신품종 출원 비중	18
[그림 3-1] 전 세계 특허출원 건수 추이	39
[그림 3-2]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45
[그림 3-3]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및 유형별 비중	49
[그림 3-4] 우리나라의 공공행정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및 비중	50
[그림 3-5] 최근 3년간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의 지역별 비중	55

제1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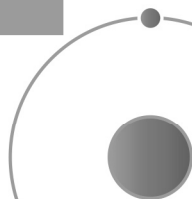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KIP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지난 2024년 6월 서울에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와 처음으로 개최한 다자 정상회의로서 아프리카와 포괄적인 경제협력 기틀을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

아프리카는 풍부한 자원과 내수시장, 노동인구 증가 등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다. 아프리카의 경제성장률은 2000년대에 연평균 약 5%를 기록했고 여전히 3~4%를 유지하고 있다.¹⁾ 그리고 아프리카 인구는 2023년에 이미 중국과 인도를 추월해 2050년에는 약 25억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²⁾

이러한 ‘마지막 신흥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세계 주요국은 치열하게 각축하고 있다. 유럽은 이미 2000년부터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해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대륙 간 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대규모 원조를 통해 아프리카와 관계를 강화하면서 2009년 이래 아프리카의 최대 교역상대국으로 자리매김했다.

우리도 금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본격적인 아프리카 경협에 나섰다. 동 정상회의를 통해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가 출범했고, 무역·투자, 핵심광물, 보건의료 등 12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경협의 초석으로 2030년까지 對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ODA)를 100억 불, 수출금융을 140억 불로 확대하기로 했다.³⁾

하지만 아프리카 사업 환경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 산업 인프라와 법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특히, 특허기술과 브랜드가 비즈니스 성패를 결정하는 시대에 아프리카의 지식재산 인프라는 글로벌 수준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지난 10년 간 아프리카의 특허출원이 약 50% 급증했지만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7%에 불과하다. 특허나 상표를 심사·보호할 인력과 시스템도 턱없이 부족하다. 한편으로,

1) African Development Bank Group, “African Economic Outlook 2023 : Mobilizing Private Sector Financing for Climate and Green Growth in Africa”, African Development Bank(2023), p.3.

2)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 United Nations(2022), p.4.

3) 대한민국 대통령실,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동 보도자료의 원문은 다음의 대한민국 대통령실 웹사이트를 참조 : <https://www.president.go.kr/newsroom/press/L6VAe3Lz> (2024년 9월 1일 최종방문).

2016년에 채택된 범아프리카지식재산기구(PAIPO)는 아직 제대로 출범하지 못해 지역별로 지식재산 시스템이 통일되지 않고 있다.

이런 열악한 지식재산 인프라는 아프리카 혁신기업 성장을 방해하고 우리 기업의 투자·진출에도 걸림돌이 된다. 위조상품, 기술탈취 등이 심각한 중국 시장이 그러한 전례이다. 따라서 아프리카와 동반성장, 지속가능한 경협을 이루려면 현지 지식재산 인프라를 개선하려는 공감과 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나라의 對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ODA)는 지식재산 부문의 원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지식재산 부문에서 우리 정부의 對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ODA)는 주로 인도적 차원의 적정기술 개발에만 초점을 두어 왔는데, 이를 아프리카 지식재산 인프라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에 앞서 아프리카 경협을 구축한 유럽은 2020년에 아프리카 지식재산 협력 모델(AfriIPI)을 수립하여 혁신사례 공유, 역량 강화 교육 등 아프리카 지식재산 역량 제고를 종합적으로 원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對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ODA)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식재산 부문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사업들을 식별하고 이를 위한 사업모델을 개략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지식재산과 관련한 아프리카의 활동, 지역레짐, 인프라 환경 등을 조사하고, 다른 국가들이 지식재산 부문에서 추진한 對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들의 내용에 대하여도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의 내용과 방법



본 연구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대외 협력연구의 일환으로 對아프리카 지식재산 부문 공적개발원조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사업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아프리카 지역의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출원·등록 현황을 조사하고 전 세계 산업재산권 활동에서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하여 지역 지식재산 활동 성향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2024년에 유전자원 출처공개에 관한 국제조약이 타결되면서 식물신품종, 유전자원, 전통지식 등 신지식재산에 관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관심이 높음을 고려하여, 아프리카 지역의 식물신품종 출원·등록 현황에 관하여도 추가로 조사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출범한 두 개의 지식재산 지역기구에 대해 기구 현황과 운영에 관하여 기구 설립협정 및 부속서 등을 바탕으로 상세히 검토하였다.

〈표 1-1〉 아프리카 지역 지식재산 기구 현황

아프리카 지역 지식재산 기구	가맹국 현황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기구 (ARIPO) (22)	보츠와나, 카보베르데, 가나, 케냐, 에스와티니, 레소토, 라이베리아, 말라위, 모리셔스, 모잠비크, 나미비아, 르완다, 상투메 프린시페, 세이셸,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수단, 탄자니아, 감비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아프리카지식재산기구 (OAPI) (17)	베냉,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코모로, 콩고, 코트디부아르, 가봉, 기니, 기니비사우, 적도기니, 말리, 모리타니, 니제르, 세네갈, 차드, 토고

이들 아프리카 지역기구는 언어권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기구의 경우 회원국들이 각자 국내 지식재산 관할청을 운영하면서 지역기구를 동시에 운영하는 이원적 관할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비하여, 아프리카지식재산기구의 경우엔 회원국들이 별도로 지식재산 관할청을 두지 않고 지역기구가 회원국을 대신에 지식재산 관할청 역할을 수행한다는 차이가 있다.

또한, 아프리카지식재산기구는 기구 설립협정을 체결하면서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절차에 관한 부속서들을 채택하여 산업재산권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기구는 기구 설립협정과 별도로 특허, 상표, 산업디자인 등에 관한 조약을 추가로 체결하여 산업재산권 업무를 처리한다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아프리카지식재산지역기구의 설립협정들을 검토하여 기구의 설립 배경과 연혁, 목적과 역할, 구성 및 권한 등에 관해 차례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기구 산업재산권 절차와 관련하여, 특허, 산업디자인에 관한 하라레의정서, 상표에 관한 반줄의정서 내용을 추가로 상세히 검토하였다.

〈표 1-2〉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기구 관리조약 현황 (2024년 5월 30일 기준)

회원국	루사카 협정 (ARIPO 창설)	하라레 의정서 (특허, 디자인)	반줄 의정서 (상표)	스바코프문트 의정서 (전통지식)	아루사 의정서 (식물신품종)
보츠와나	1985년 2월 6일	1985년 5월 6일	2003년 10월 29일	2015년 5월 11일	-
카보베르데	2022년 7월 14일	2022년 10월 14일	2022년 10월 14일	2022년 10월 14일	2022년 7월 14일
에스와티니	1987년 12월 17일	1988년 3월 17일	1997년 3월 6일	-	-
감비아	1978년 2월 15일	1986년 1월 16일	2021년 8월 3일	2015년 5월 11일	-
가나	1978년 2월 15일	1984년 4월 25일	-	-	-
케냐	1978년 2월 15일	1984년 10월 24일	-	-	-
레소토	1987년 7월 23일	1987년 10월 23일	1999년 2월 12일	-	-
라이베리아	2009년 12월 24일	2010년 3월 24일	2010년 3월 24일	2016년 10월 25일	-
말라위	1978년 2월 15일	1984년 4월 25일	1997년 3월 6일	2015년 5월 11일	-
모리셔스	2020년 9월 25일	-	-	-	-
모잠비크	2000년 2월 8일	2000년 5월 8일	2020년 8월 5일	-	-
나미비아	2003년 10월 14일	2004년 4월 23일	2004년 1월 14일	2015년 5월 11일	-
르완다	2011년 6월 24일	2011년 9월 24일	-	2015년 5월 11일	2019년 6월 7일
상투메 프린시페	2014년 5월 19일	2014년 8월 19일	2016년 2월 27일	-	2020년 9월 29일
세이셸	2021년 10월 1일	2022년 1월 1일	-	-	-
시에라리온	1980년 12월 5일	1999년 2월 25일	-	-	-
소말리아	1981년 12월 10일	-	-	-	-
수단	1978년 5월 2일	1984년 4월 25일	-	-	-
우간다	1978년 8월 8일	1984년 4월 25일	2000년 11월 21일	-	-
탄자니아	1983년 10월 12일	1999년 9월 1일	1999년 9월 1일	-	-
잠비아	1978년 2월 15일	1986년 2월 26일	-	2015년 8월 28일	-
짐바브웨	1980년 11월 11일	1984년 4월 25일	1997년 3월 6일	2015년 5월 11일	-

한편,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기구의 관리조약 중에 전통지식, 전통문화표현물 보호에 관한 스바코프문트 의정서가 2010년 8월에 채택되었고, 식물신품종 보호에 관한 아루사 의정서가 2015년 7월 채택되었으나, 스바코프문트 의정서 당사국은 2024년 5월 현재 9개에 불과하고, 아루사 의정서는 아직 발효되지 않은 실정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아프리카 IP-ODA 사업모델을 도출하기 위한 선행연구로서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 관련 정책들을 살펴보고, IP-ODA 현황 및 개선방향 등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이와 관련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 IP-ODA 사업의 개선점을 심층 분석하기 위하여 최근 10년간 우리나라가 추진한 지식재산 부문 공적개발원조 사업들을 수행기관, 사업내용, 사업기간 등을 기준으로 분류·정리해 검토하였다.

그리고 지식재산 부문 공적개발원조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들과 전문가 회의 및 인터뷰를 수행하여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에 있어서 예상되는 장애물과 유의점에 관하여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컨트롤타워의 설치, 중장기 사업 방향성 정립, 종합적·체계적 사업모델 수립 등 우리나라 IP-ODA의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통한 기대효과와 세부 고려사항에 관하여도 상세히 검토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본래 아프리카 지역의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지식재산 시범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이를 통해 현지 네트워크 구축 및 IP-ODA 수요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동부아프리카대학연합(IUCEA)과 두 차례 화상회의를 개최하였고, 현지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 완료해 수강생을 모집하였다. 하지만 동부아프리카대학연합(IUCEA)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강의 개시 일정이 지연되었으며, 이로 인해 지식재산 시범교육 계획이 정상적으로 완수되지 못했다.

하지만 차후에도 동부아프리카대학연합(IUCEA)과 계속해서 소통을 추진할 계획이며, 적절한 시기에 현지 대학생들에게 지식재산 시범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함으로써 현지 네트워크를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제2장

아프리카에 대한 지식재산 지역학 연구

제1절 아프리카 지식재산 환경 개황

제2절 아프리카 지식재산 지역레짐



KIP

아프리카 지역 지식재산 환경 개황



1 아프리카 지역의 지식재산 기구 창설

2024년 9월 현재 아프리카 지역은 유엔 회원국 중 총 54개 국가들이 속해 있고, 권역별로 북부아프리카, 서부아프리카, 중부아프리카 동부아프리카, 남부아프리카의 5개 권역으로 나눌 수 있다.

〈표 2-1〉 아프리카 권역별 국가 현황

아프리카 지역		국가 현황
북부아프리카 (6)		알제리, 이집트, 리비아, 모로코, 수단, 튀니지
사하라 이남	서부아프리카 (16)	베냉, 부르키나파소, 카보베르데, 코트디부아르, 감비아, 가나, 기니, 기니비사우, 라이베리아, 말리, 모리타니, 니제르, 나이지리아, 세네갈, 시에라리온, 토고
	중부아프리카 (9)	앙골라,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적도기니, 가봉, 상투메프린시페
	동부아프리카 (18)	부룬디, 코모로, 지부티,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케냐,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모잠비크, 르완다, 세이셸, 소말리아, 남수단, 우간다, 탄자니아, 잠비아, 짐바브웨
	남부아프리카 (5)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레소토,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아프리카 지역은 권역에 따라 역사적 배경이 다르지만, 18~19세기에 이루어진 유럽 국가의 식민지 정책으로 인해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이집트, 에티오피아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아프리카 지역 대부분 국가들이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식민지가 되었다. 식민지배 국가들은 아프리카 지역의 역사적·정치적 배경 등과 상관없이 임의로 경계를 획정해 식민 통치를 했다.⁴⁾

4) 아프리카에 대한 유럽 식민제국주의 과정과 아프리카 경계 획정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김봉철, “유럽 식민제국주의 과정에서 활용된 로마법의 *uti possidetis* 법리”, 유럽연구, 제41권 2호(2023) 참고.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 아프리카 국가들이 독립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경계가 그대로 국경으로 확정되었는데, 이는 역사적·정치적 기반이 다른 여러 부족들이 하나의 국가를 이룸으로써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내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하게 되었다.

한편, 아프리카 국가들은 대부분 독립 직후에 식민지배 국가들이 시행했던 법제도를 그대로 운영하였다. 이에 지식재산과 관련해서도, 아프리카 국가들은 식민지배 국가에서 등록된 특허나 상표를 별도의 심사·등록 절차 없이 효력을 인정하는 등 종속 관계가 여전히 유지되었다.⁵⁾

이에 따라 아프리카 국가들은 지식재산 측면에서 과거 식민지 관계를 종식시키고 아프리카 지역의 지식재산 인력과 자원을 통합·운영하려는 목적으로 지역 차원의 지식재산 전문기구 설립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아프리카 국가들은 지역 차원에서 두 개의 지식재산 기구를 설립하였는데,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는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기구(African Regional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RIPO),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는 아프리카지식재산기구(African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OAPI)가 각각 1976년과 1977년에 출범하였다.

2024년 3월 현재, 아프리카 지역 지식재산 기구별 가맹국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2〉 아프리카 지역 지식재산 기구별 가맹국 현황 (2024년 3월 기준)⁶⁾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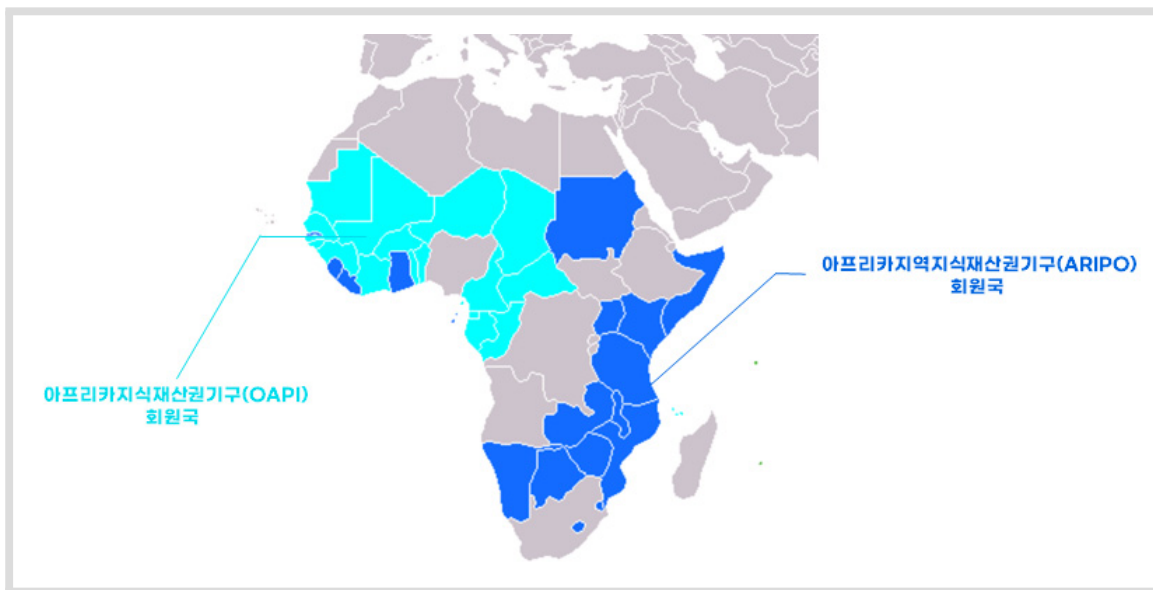
아프리카 지역 지식재산 기구	가맹국 현황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기구 (ARIPO) (22)	보츠와나, 카보베르데, 가나, 케냐, 에스와티니, 레소토, 라이베리아, 말라위, 모리셔스, 모잠비크, 나미비아, 르완다, 상투메 프린시페, 세이셸,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수단, 탄자니아, 감비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아프리카지식재산기구 (OAPI) (17)	베냉,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코모로, 콩고, 코트디부아르, 가봉, 기니, 기니비사우, 적도기니, 말리, 모리타니, 니제르, 세네갈, 차드, 토고

5) 김시열, 김태영, “방기(BANGUI) 협정 상 특허규범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IP FOCUS, 제2023-22호 (2023), p.6.

6)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기구(ARIPO)의 회원국 현황은 다음의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기구(ARIPO) 웹사이트를 참조 : <https://www.aripo.org/member-states> (2024년 3월 16일 최종방문).

7) 아프리카지식재산기구(OAPI)의 회원국 현황은 다음의 아프리카지식재산기구(OAPI)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oapi.int/index.php/en/> (2024년 3월 16일 최종방문).

[그림 2-1] 아프리카 지역 지식재산 기구별 가맹국 현황 (2024년 3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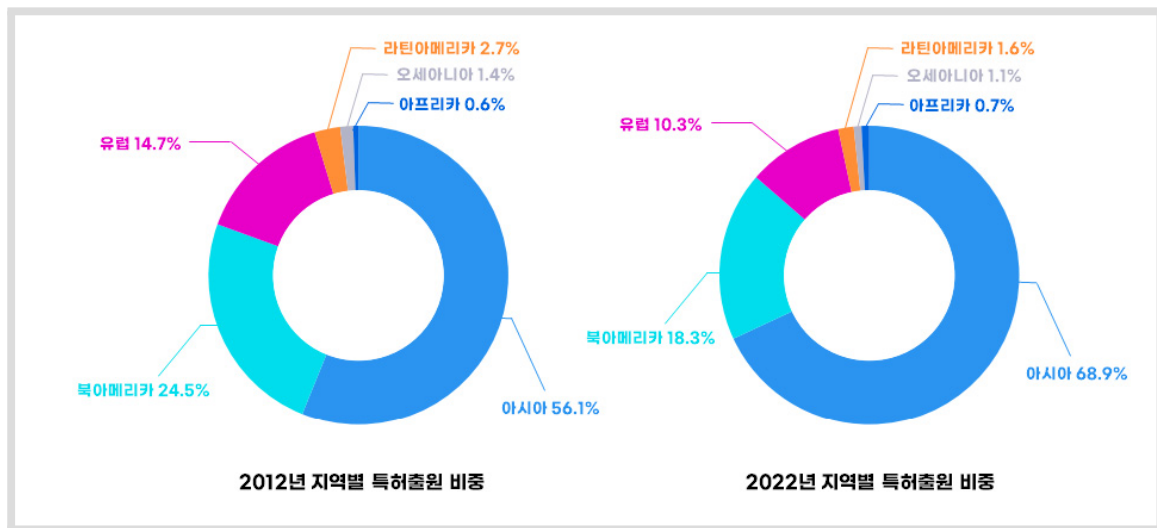
2 아프리카 지역의 지식재산 현황

아프리카 지역에서 특허,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은 지역기구를 통한 출원·등록과 개별 국가 관할청을 통한 출원·등록으로 구분된다. 특히, 지식재산 지역기구에 가입한 국가들의 경우 이러한 지역기구가 역내 지식재산 체계에 관한 국제조약을 통해 역내 국가들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을 담당하고 있다.

(1) 특허출원·등록 현황

아프리카 지역은 전 세계 특허출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미만으로 매우 낮다. 하지만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아프리카 지역의 특허출원은 연평균 약 5.2%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아시아 지역 다음으로 높았으며, 내국인의 특허출원 비중도 2022년에 약 19.3%를 기록하는 등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림 2-2] 전 세계 지역별 특허출원 비중⁸⁾



〈표 2-3〉 전 세계 지역별 특허출원 건수⁹⁾

지 역	특허출원 건수		특허출원 내국인 비중		전 세계 특허출원 비중		평균 성장률 2012~2022
	2012	2022	2012	2022	2012	2022	
아프리카	14,700	24,300	15.6%	19.3%	0.6%	0.7%	5.2%
아시아	1,321,300	2,349,200	76.7%	82.7%	56.1%	67.9%	5.9%
유럽	345,800	355,100	63.2%	54.7%	14.7%	10.3%	0.3%
라틴아메리카	63,100	57,000	12.2%	13.5%	2.7%	1.6%	-1.0%
북아메리카	578,100	632,400	47.3%	40.6%	24.5%	18.3%	0.9%
오세아니아	33,400	39,400	11.9%	6.9%	1.4%	1.1%	1.6%
전 세계	2,356,500	3,457,400	64.5%	69.7%	100.0%	100.0%	3.9%

아프리카 지역은 전 세계 특허등록에서도 차지한 비중이 1% 미만으로 아직 매우 낮은 실정이지만, 2012년부터 2022년까지 특허등록 건수가 연평균 약 4.2%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다만, 내국인 특허출원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내국인 특허등록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8)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s 2023". WIPO (2023), p.12.

9)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s 2023". WIPO (2023), p.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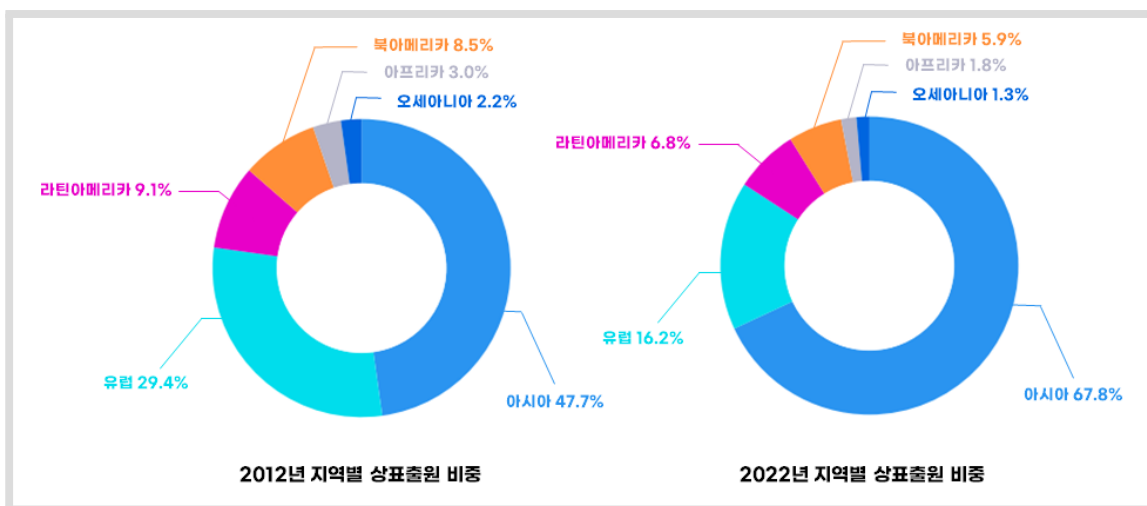
〈표 2-4〉 전 세계 지역별 특허등록 건수¹⁰⁾

지 역	특허등록 건수		특허등록 내국인 비중		전 세계 특허등록 비중		평균 성장률 2012~2022
	2012	2022	2012	2022	2012	2022	
아프리카	10,700	16,200	12.5%	8.3%	0.9%	0.9%	4.2%
아시아	649,000	1,226,700	72.4%	79.3%	57.0%	67.3%	6.6%
유럽	159,100	178,700	61.7%	56.2%	14.0%	9.8%	1.2%
라틴아메리카	20,200	41,500	5.6%	9.1%	1.8%	2.3%	7.5%
북아메리카	275,00	341,500	44.9%	42.1%	24.2%	18.7%	2.2%
오세아니아	24,000	18,600	6.9%	6.2%	2.1%	1.0%	-2.5%
전 세계	1,138,000	1,823,200	61.1%	67.1%	100.0%	100.0%	4.8%

한편, 아프리카에서 특허출원·등록 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2022년에 특허출원 2,619건, 특허등록 1,175건을 기록했다.

(2) 상표출원·등록 현황

아프리카 지역은 전 세계 상표출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 기준 약 1.8%로, 특허출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직 매우 낮다. 하지만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아프리카 지역의 상표출원은 연평균 약 3.7%의 성장률을 기록해 점증하고 있고, 내국인의 상표출원 비중도 2022년 약 46.1%를 기록하는 등 높은 수준이다.

[그림 2-3] 전 세계 지역별 상표출원 비중¹¹⁾

10)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s 2023". WIPO (2023), p.27.

11)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s 2023". WIPO (2023), p.69.

〈표 2-5〉 전 세계 지역별 상표출원 건수¹²⁾

지 역	상표출원 건수		상표출원 내국인 비중		전 세계 상표출원 비중		평균 성장률 2012~2022
	2012	2022	2012	2022	2012	2022	
아프리카	198,300	285,500	45.2%	46.1%	3.0%	1.8%	3.7%
아시아	3,176,100	10,540,100	79.8%	91.0%	47.7%	67.8%	12.7%
유럽	1,959,900	2,522,700	72.7%	72.0%	29.4%	16.2%	2.6%
라틴아메리카	604,900	1,064,500	64.6%	73.5%	9.1%	6.8%	5.8%
북아메리카	568,300	920,900	71.6%	59.5%	8.5%	5.9%	4.9%
오세아니아	149,500	209,600	57.9%	48.7%	2.2%	1.3%	3.4%
전 세계	6,657,000	15,543,300	74.1%	83.5%	100.0%	100.0%	8.8%

아프리카 지역은 전 세계 상표등록에서도 차지한 비중이 2022년 기준 약 2.0%로 아직 매우 낮지만,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상표등록 건수가 연평균 약 4.4%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리고 내국인 상표등록 비중도 계속 약 30% 수준을 유지하여 내국인의 상표등록 건수도 점증하고 있다.

〈표 2-6〉 전 세계 지역별 상표등록 건수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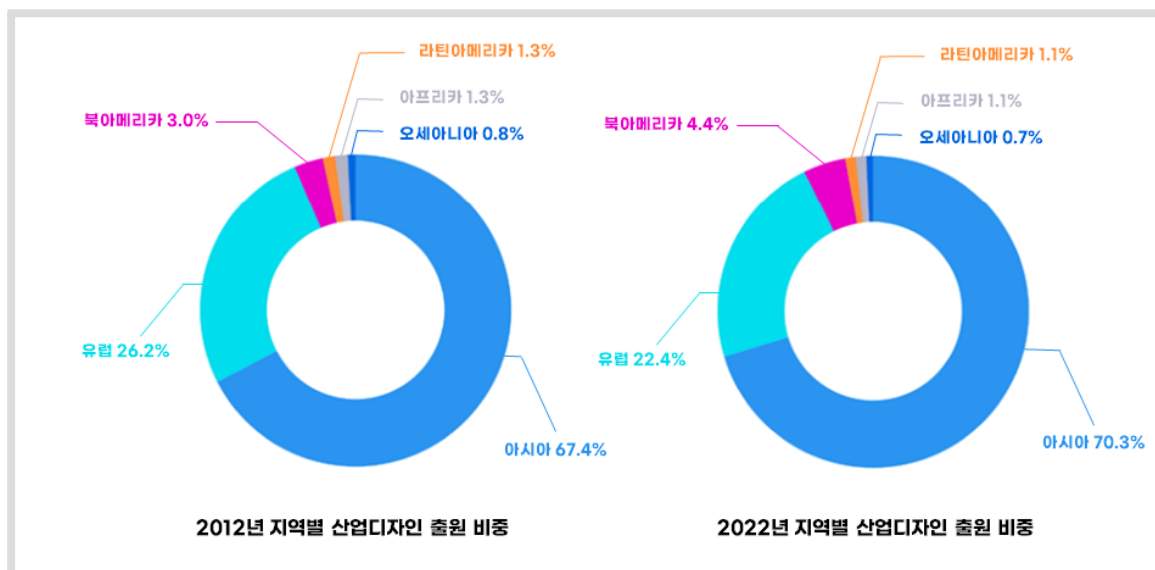
지 역	상표등록 건수		상표등록 내국인 비중		전 세계 상표등록 비중		평균 성장률 2012~2022
	2012	2022	2012	2022	2012	2022	
아프리카	160,000	245,500	32.7%	33.8%	3.4%	2.0%	4.4%
아시아	2,000,400	8,351,400	72.3%	88.1%	43.1%	67.4%	15.4%
유럽	1,608,300	2,297,800	66.0%	66.4%	34.6%	18.6%	3.6%
라틴아메리카	434,600	677,300	58.2%	61.4%	9.4%	5.5%	4.5%
북아메리카	327,400	600,100	67.3%	43.3%	7.0%	4.8%	6.2%
오세아니아	113,400	211,700	48.9%	43.8%	2.4%	1.7%	6.4%
전 세계	4,644,100	12,383,800	66.5%	78.6%	100.0%	100.0%	10.3%

(3) 산업디자인 출원 현황

아프리카 지역은 전 세계 산업디자인 출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 기준 약 1.1%에 불과해 특히나 상표출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우 낮은 수준이고,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출원 성장률이 연평균 약 0.1%에 불과하다. 다만, 내국인의 산업디자인 출원 비중은 2022년 약 64.7%를 기록해 높은 수준이다.

12)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s 2023". WIPO (2023), p.80.

13)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s 2023". WIPO (2023), p.82.

[그림 2-4] 전 세계 지역별 산업디자인 출원 비중¹⁴⁾〈표 2-7〉 전 세계 지역별 산업디자인 출원 건수¹⁵⁾

지 역	디자인 출원 건수		디자인 출원 내국인 비중		전 세계 디자인 출원 비중		평균 성장률
	2012	2022	2012	2022	2012	2022	2012~2022
아프리카	16,200	16,400	51.3%	64.7%	1.3%	1.1%	0.1%
아시아	848,200	1,042,800	93.6%	93.5%	67.4%	70.3%	2.1%
유럽	329,900	331,600	56.7%	63.4%	26.2%	22.4%	0.1%
라틴아메리카	15,800	17,000	48.1%	52.1%	1.3%	1.1%	0.7%
북아메리카	38,200	65,100	51.5%	31.7%	3.0%	4.4%	5.5%
오세아니아	10,300	9,700	38.2%	26.2%	0.8%	0.7%	-0.6%
전 세계	1,258,600	1,482,600	77.7%	85.0%	100.0%	100.0%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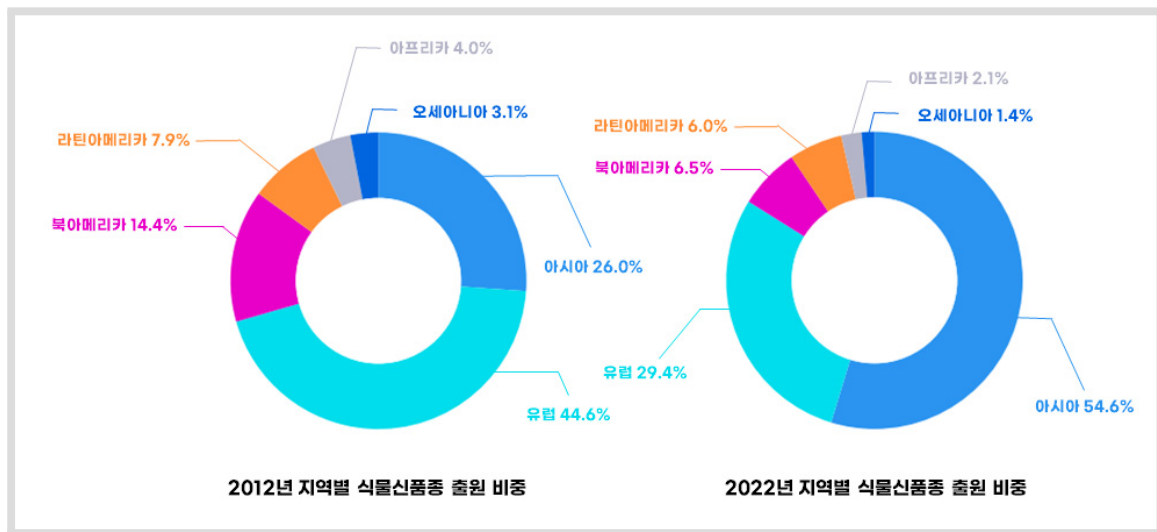
(4) 식물신품종 출원 현황

아프리카 지역은 전 세계 식물신품종 출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 기준 약 2.1%에 불과해 다른 산업재산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우 낮은 수준이고,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출원 성장률도 연평균 약 -0.1%에 불과하다. 그리고 내국인 식물신품종 출원 비중이 2022년에 약 17.9%를 기록하는 등 내국인 식물신품종 출원 건수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14)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s 2023". WIPO (2023), p.112.

15)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s 2023". WIPO (2023), p.121.

[그림 2-5] 전 세계 지역별 식물신품종 출원 비중¹⁶⁾



〈표 2-8〉 전 세계 지역별 식물신품종 출원 건수¹⁷⁾

지 역	식물품종 출원 건수		식물품종 출원 내국인 비중		전 세계 식물품종 출원 비중		평균 성장률 2012~2022
	2012	2022	2012	2022	2012	2022	
아프리카	571	564	42.0%	17.9%	4.0%	2.1%	-0.1%
아시아	3,672	14,883	80.1%	91.4%	26.0%	54.6%	15.0%
유럽	6,310	8,026	67.8%	75.1%	44.6%	29.4%	2.4%
라틴아메리카	1,117	1,633	46.5%	47.2%	7.9%	6.0%	3.9%
북아메리카	2,034	1,765	43.2%	45.8%	14.4%	6.5%	-1.4%
오세아니아	436	389	42.4%	38.0%	3.1%	1.4%	-1.1%
전 세계	14,140	27,260	63.9%	78.7%	100.0%	100.0%	6.8%

16)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s 2023". WIPO (2023), p.146.

17)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s 2023". WIPO (2023), p.150.

아프리카 지식재산 지역레짐



1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기구(ARIPO)

1972년 10월에 케냐 나이로비(Nairobi)에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개최한 아프리카 지식재산 세미나에서 산업재산권에 관한 영어권 아프리카 지역기구의 설립이 처음으로 제안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지식재산기구와 유엔아프리카경제위원회(UNECA)는 아프리카 역내 산업재산권 기구의 설립에 관한 논의를 주도하였으며, 1974년 6월에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Addis Ababa)에서 19개의 영어권 아프리카 국가들을 초청하여 산업재산권 지역기구 설립을 위한 협약 초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세계지식재산기구와 유엔아프리카경제위원회(UNECA)는 1976년 12월에 잠비아 루사카(Lusaka)에서 동 협약을 채택하기 위하여 외교회의를 소집하였고,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기구 창설에 관한 루사카 협정(Lusaka Agreement on the Creation of the African Regional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이 최종 채택되었다.¹⁸⁾

동 협정은 1978년 2월 15일에 정식 발효하였고, 이에 따라 설립된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기구는 케냐 나이로비에 본부를 두었다가 1981년 9월 짐바브웨 하라레(Harare)로 본부를 이전하였다.

2024년 5월 현재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기구에는 총 22개 영어권 아프리카 국가들이 속해 있으며,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관련 실무를 위해 동 기구는 하라레 의정서(Harare Protocol), 반줄 의정서(Banjul Protocol) 등 별도의 조약을 채택·적용하고 있다.¹⁹⁾

하지만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기구(ARIPO)의 관리조약들은, 특허, 산업디자인 등에 관한 하라레 의정서를 제외하면, 상표에 관한 반줄 의정서 및 전통지식에 관한 스바코프몬트 의정서²⁰⁾

18) 1976년 12월 9일 채택된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기구(ARIPO) 창설에 관한 루사카 협정(Lusaka Agreement on the Creation of the African Regional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원문은 다음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웹사이트를 참조 : <https://www.wipo.int/wipolex/en/text/301376> (2024년 5월 30일 최종방문).

19)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기구(ARIPO)가 특허, 디자인, 상표, 식물신품종 등 역내에서 산업재산권 관련 실무를 위해 별도로 채택·적용하고 있는 조약들에 관하여는 다음의 세계지식재산기구 웹사이트를 참조 : <https://www.wipo.int/wipolex/en/treaties/results?countryOrgs=ARIPO> (2024년 5월 9일 최종방문).

에 가입한 당사국이 각각 13개, 9개에 불과하고, 식물신품종에 관한 아루샤 의정서²¹⁾의 경우에는 아직 발효되지도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기구(ARIPO)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역내 거버넌스를 아직 포괄적으로 발휘하고 있지는 못하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실무를 개별 국가의 산업재산권 법체계에 기대고 있다.

(1) ARIPO 기구 구성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기구(ARIPO)는 유엔아프리카경제위원회(UNECA),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아프리카 동맹(African Union)과 밀접하고 지속적인 업무 협력 관계를 수립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²²⁾ 이러한 견지에서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기구(ARIPO)의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유엔아프리카경제위원회(UNECA)나 아프리카 동맹(African Union)의 회원이어야 한다.²³⁾

그리고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기구(ARIPO)는 각료이사회(Council of Ministers), 행정이사회(Administrative Council), 사무국, 그리고 행정이사회가 설치하는 보조기관으로 구성된다.²⁴⁾

각료이사회는 기구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기구의 방향을 설정하고 기구 활동에 관한 조치들을 결정·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각료이사회는 루사카 협정 당사국의 각료들로 구성되는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²⁵⁾

- ① 행정이사회로부터 기구의 프로그램, 연례 보고, 예산·회계 보고 등 접수
- ② 당사국들이 부담하는 특별기여금에 관한 사항의 결정
- ③ 기구의 방향성 및 활동 등에 관해 행정이사회 및 사무국에 지시
- ④ 기구 절차규칙 제정 등 루사카 협정에 의해 위임된 기타 권한의 행사

20)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기구(ARIPO) 관할조약으로서, 전통지식 및 전통문화표현물의 보호에 관한 스바코프문트 의정서(Swakopmund Protocol)는 2010년 8월 9일 채택되어 2015년 5월 11일 정식 발효하였다. 스바코프문트 의정서의 원문은 다음의 세계지식재산기구 웹사이트를 참조 : <https://www.wipo.int/wipolex/en/text/588146> (2024년 5월 30일 최종방문).

21)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기구(ARIPO) 관할조약으로서, 식물신품종 보호에 관한 아루샤 의정서(Arusha Protocol)는 2015년 7월 6일에 채택되었으나, 2024년 5월 30일 현재까지 이를 비준·가입한 국가가 카보베르데, 르완다, 상투메 프린시페 3개에 불과하여 아직 정식으로 발효되지 않았다. 아루샤 의정서의 원문은 다음의 세계지식재산기구 웹사이트를 참조 : <https://www.wipo.int/wipolex/en/text/527563> (2024년 5월 30일 최종방문).

22)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기구(ARIPO) 창설에 관한 루사카 협정 제5조.

23)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기구(ARIPO) 창설에 관한 루사카 협정 제4조.

24)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기구(ARIPO) 창설에 관한 루사카 협정 제2조.

25)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기구(ARIPO) 창설에 관한 루사카 협정 제6조의2.

그리고 행정이사회는 기구의 운영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루사가 협정 당사국들의 지식재산 관할청의 청장들로 구성된다. 행정이사회는 매년 정기회를 개최하는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²⁶⁾

- ① 기구 활동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이행 관리
- ② 기구의 프로그램, 연례 보고, 예산·회계 등 승인
- ③ 당사국들이 부담하는 부담금 및 특별기여금에 관한 사항의 결정
- ④ 필요한 보조기관의 설치 및 보조기관 업무수행 규칙의 제정
- ⑤ 기구의 재정, 행정, 기타 활동을 관리하는 규칙의 제정
- ⑥ 기구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활동

기구 운영을 위해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기구(ARIPO)는 일반기금과 특별기금을 편성하고,²⁷⁾ 당사국들은 연간 부담금 및 각료이사회 결정에 따라 특별기여금을 납부한다.²⁸⁾

한편 루사가 협정은 분쟁해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동 협정의 해석·적용과 관련한 분쟁은 행정이사회에 회부되며 행정이사회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각료이사회가 분쟁에 대한 최종적이며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린다.²⁹⁾

(2) ARIPO 목적 및 관리조약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기구(ARIPO)는 역내 국가들의 지식재산 법률·정책 조화, 관련 정보 교환, 유엔아프리카경제위원회(UNECA),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다른 기구들과의 지식재산 협력을 추구한다.³⁰⁾

이를 위해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기구(ARIPO)는 다음의 사항을 기구의 목적으로 천명하고 있다.³¹⁾

- ① 역내에서 적절한 지식재산 법률의 조화 및 발전 촉진
- ② 지식재산 관련 사안에 대해 당사국들 간의 긴밀한 관계 구축
- ③ 역내 지식재산 활동의 조정·발전을 위한 서비스 및 기관 수립
- ④ 지식재산 법률 행정 담당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수립

26)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기구(ARIPO) 창설에 관한 루사가 협정 제7조.

27)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기구(ARIPO) 창설에 관한 루사가 협정 제10조.

28)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기구(ARIPO) 창설에 관한 루사가 협정 제11조.

29)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기구(ARIPO) 창설에 관한 루사가 협정 제13조.

30)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기구(ARIPO) 창설에 관한 루사가 협정 서문.

31)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기구(ARIPO) 창설에 관한 루사가 협정 제3조.

- ⑤ 지식재산 관련 사안에 관한 경험 교환, 연구 수행, 세미나 등 개최
- ⑥ 지식재산 관련 사안에 대해 당사국들의 공동의 견해 및 접근방식 도출
- ⑦ 지식재산 관련 사안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습득 지원 등

이러한 목적에 따라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기구(ARIPO)는 우선 특허, 산업디자인의 산업재산권에 관한 역내 국가들의 법률, 정책, 실무의 조화·발전을 목적으로 1982년 12월 10일에 하라레 의정서³²⁾를 채택하였다.

하라레 의정서는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기구(ARIPO)에 속한 22개 아프리카 국가 중에 20개 국가들이 가입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복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특허나 산업디자인을 일괄 출원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국제출원 경로이다.

그리고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기구(ARIPO)는 상표에 관해서도 역내의 법률, 정책, 실무의 조화를 목적으로 1993년 11월 19일 반줄 의정서³³⁾를 채택했다. 하지만 동 의정서에 가입한 국가가 2024년 5월 현재 13개에 불과하고, 일부 당사국들은 동 의정서 규정을 국내법으로 아직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기구(ARIPO)는 또한 전통지식, 전통문화표현물 보호에 관한 스바코프문트 의정서를 2010년 8월 9일에 채택하였고, 식물신품종 보호에 관한 아루샤 의정서를 2015년 7월 6일 채택했다. 하지만 스바코프문트 의정서 당사국은 2024년 5월 현재 9개에 불과하고, 아루샤 의정서는 아직 발효조차 되지 않았다.

〈표 2-9〉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기구 관리조약 현황 (2024년 5월 30일 기준)³⁴⁾

회원국	루사카 협정 (ARIPO 창설)	하라레 의정서 (특허, 디자인)	반줄 의정서 (상표)	스바코프문트 의정서 (전통지식)	아루샤 의정서 (식물신품종)
보츠와나	1985년 2월 6일	1985년 5월 6일	2003년 10월 29일	2015년 5월 11일	-
카보베르데	2022년 7월 14일	2022년 10월 14일	2022년 10월 14일	2022년 10월 14일	2022년 7월 14일
에스와티니	1987년 12월 17일	1988년 3월 17일	1997년 3월 6일	-	-
감비아	1978년 2월 15일	1986년 1월 16일	2021년 8월 3일	2015년 5월 11일	-

32)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기구(ARIPO)의 특허와 산업디자인에 관한 하라레 의정서(Harare Protocol)는 1982년 12월 10일 채택되어 1984년 4월 25일 정식 발효하였으며, 2024년 5월 30일 현재까지 총 17차례 개정되었다. 가장 최근에 2022년 11월 25일 개정된 하라레 의정서의 원문은 다음의 세계지식재산기구 웹사이트를 참조 : <https://www.wipo.int/wipolex/en/text/588138> (2024년 5월 30일 최종방문).

33)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기구(ARIPO)의 상표에 관한 반줄 의정서(Banjul Protocol)는 1993년 11월 19일 채택되어 1997년 3월 6일 정식 발효하였으며, 2024년 5월 30일 현재까지 총 13차례 개정되었다. 가장 최근에 2022년 11월 25일 개정된 반줄 의정서의 원문은 다음의 세계지식재산기구 웹사이트를 참조 : <https://www.wipo.int/wipolex/en/text/588134> (2024년 5월 30일 최종방문).

34)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기구(ARIPO) 창설에 관한 루사카 협정에 가입한 아프리카 국가 현황은 다음의 세계지식재산기구 웹사이트를 참조 : <https://www.wipo.int/wipolex/en/treaties/parties/202> (2024년 5월 9일 최종방문).

회원국	루사카 협정 (ARIPO 창설)	하라레 의정서 (특허, 디자인)	반줄 의정서 (상표)	스바코프문트 의정서 (전통지식)	아루샤 의정서 (식물신품종)
가나	1978년 2월 15일	1984년 4월 25일	-	-	-
케냐	1978년 2월 15일	1984년 10월 24일	-	-	-
레소토	1987년 7월 23일	1987년 10월 23일	1999년 2월 12일	-	-
라이베리아	2009년 12월 24일	2010년 3월 24일	2010년 3월 24일	2016년 10월 25일	-
말라위	1978년 2월 15일	1984년 4월 25일	1997년 3월 6일	2015년 5월 11일	-
모리셔스	2020년 9월 25일	-	-	-	-
모잠비크	2000년 2월 8일	2000년 5월 8일	2020년 8월 5일	-	-
나미비아	2003년 10월 14일	2004년 4월 23일	2004년 1월 14일	2015년 5월 11일	-
르완다	2011년 6월 24일	2011년 9월 24일	-	2015년 5월 11일	2019년 6월 7일
상투메 프린시페	2014년 5월 19일	2014년 8월 19일	2016년 2월 27일	-	2020년 9월 29일
세이셸	2021년 10월 1일	2022년 1월 1일	-	-	-
시에라리온	1980년 12월 5일	1999년 2월 25일	-	-	-
소말리아	1981년 12월 10일	-	-	-	-
수단	1978년 5월 2일	1984년 4월 25일	-	-	-
우간다	1978년 8월 8일	1984년 4월 25일	2000년 11월 21일	-	-
탄자니아	1983년 10월 12일	1999년 9월 1일	1999년 9월 1일	-	-
잠비아	1978년 2월 15일	1986년 2월 26일	-	2015년 8월 28일	-
짐바브웨	1980년 11월 11일	1984년 4월 25일	1997년 3월 6일	2015년 5월 11일	-

한편,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기구(ARIPO)는 특허,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상표의 산업재산권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정보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³⁵⁾ 당사국들의 산업재산권 출원·접수 등에 관한 통계를 수집해 공표하고 있다.³⁶⁾

(3) ARIPO 하라레 의정서(Harare Protocol) 주요내용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기구(ARIPO) 하라레 의정서는 1982년 12월 10일 채택되어 1984년 4월 25일에 정식으로 발효하였고, 가장 최근에는 2022년 11월 25일에 개정되었다.

하라레 의정서는 다음과 같이 서문과 총 1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35)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기구(ARIPO)의 산업재산권 데이터베이스 정보검색서비스는 다음의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기구(ARIPO) 웹사이트를 참조 : <http://regionalip.aripo.org/wopublish-search/public/home?9&0>. (2024년 5월 30일 최종방문).

36)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기구(ARIPO)가 제공하는 역내 산업재산권 통계 정보에 관하여는 다음의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기구(ARIPO) 웹사이트를 참조 : <https://www.aripo.org/publications/ip-statistics> (2024년 5월 30일 최종방문).

〈표 2-10〉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기구 하라레 의정서의 구성 (2022년 11월 25일 개정)

Sections	제 목	주요내용
제1조	총칙	하라레 의정서를 통한 국제출원의 효과
제1조의2	하나 이상의 당사국을 지정국으로 포함하는 출원	ARIPO 출원 절차 개요
제2조	대리인 선임 및 출원서 송부	대리인 선임 및 출원서 제출 절차
제2조의2	ARIPO 특허출원	특허출원서 작성
제2조의3	ARIPO 특허출원의 공개	특허출원 공개의 기산
제2조의4	제3자의 의견 제출	공개된 출원 발명에 대한 의견 제출
제3조	특허	특허허여 절차, 보호기간 등
제3조의2	특허협력조약(PCT)을 통한 국제출원	PCT를 통한 국제출원 절차
제3조의3	실용신안	실용신안 등록 절차, 보호기간 등
제3조의4	ARIPO 실용신안 출원의 공개	실용신안 출원 공개의 기산
제4조	산업디자인	산업디자인 등록 절차, 보호기간 등
제4조의2	항소기구	항소기구의 구성, 의결 정족수 등
제5조	규칙	수수료, 심사실무 등에 관한 규칙 제정
제5조의2	권리 회복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자의 권리 회복
제5조의3	청구항 제한 신청 (허여·등록 후 수정)	청구항 범위 조정 신청 절차
제6조	발효	의정서의 발효 요건
제7조	의정서 탈퇴	의정서 탈퇴 절차
제8조	의정서 서명	의정서 서명 절차
제9조	의정서 개정	의정서 개정을 위한 의결 정족수

(가) ARIPO 특허·실용신안·산업디자인 절차 일반

동 의정서에 의거해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기구(ARIPO)는 당사국들을 대신하여 특허를 허여하고, 실용신안과 산업디자인을 등록하며, 이러한 특허, 실용신안, 산업디자인을 관리할 권한을 가진다.³⁷⁾

그리고 이렇게 하라레 의정서에 의해 허여되거나 등록된 특허 등을 ARIPO 특허, ARIPO 실용신안, ARIPO 산업디자인으로 지칭하는데, 이러한 ARIPO 특허 등은 허여·등록된 당사국에서 해당 국가의 국내 특허 등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³⁸⁾

이에 따라 ARIPO 특허, ARIPO 실용신안, ARIPO 산업디자인을 획득하려는 자는 하라레 의정서를 통해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기구(ARIPO)에 속한 하나 이상의 당사국을 지정하여 특허허여를 신청하거나, 실용신안이나 산업디자인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³⁹⁾

37) 특허와 산업디자인에 관한 하라레 의정서(Harare Protocol) 제1조 제1항.

38) 특허와 산업디자인에 관한 하라레 의정서(Harare Protocol) 제1조 제2항 및 제3항.

이때 당사국은 발명 해외 공개, 선행기술에 관한 조건을 국내법으로 정할 수 있고 ARIPO 특허 등을 획득하려는 출원인은 지정하려는 당사국의 이와 같은 국내법을 따라야 한다.⁴⁰⁾ 한편 출원인은 ARIPO 사무국이 있는 짐바브웨 혹은 지정하려는 당사국에 거주지나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반드시 대리인을 통해 출원서를 제출해야 한다.⁴¹⁾

산업재산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의 당사국 혹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특허허여를 신청했거나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등록을 신청한 출원인은 동일한 발명이나 산업디자인을 ARIPO 특허 등으로 출원하려는 경우, 특허와 실용신안에 대하여는 12개월, 산업디자인에 대하여는 6개월 동안 우선권을 가진다.⁴²⁾

(나) ARIPO 특허 절차

하라레 의정서는 ARIPO 특허 절차와 관련해 우선 제2조의2 내지 제2조의4에서 출원 대상이 되는 발명, 특허출원의 공개, 출원 공개에 따른 제3자 의견 제출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ARIPO 특허출원은 하나의 발명 혹은 단일한 일반적인 발명 개념을 형성하는 서로 연관된 발명 그룹에 관한 것으로, 해당 분야의 숙련된 기술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해당 발명을 명확하고 완전히 공개해야 한다.⁴³⁾

ARIPO 사무국은 출원일 혹은 우선권 주장일로부터 18개월 이후에 가능한 빨리 ARIPO 특허출원을 공개해야 하며, 이러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특허허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특허허여 결정과 동시에 해당 특허출원을 공개해야 한다.⁴⁴⁾

그리고 ARIPO 특허 절차 상 이러한 특허출원 공개가 이루어진 이후에 제3자는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특허출원이나 특허와 관련 있는 발명의 특허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⁴⁵⁾

하라레 의정서는 다음으로 제3조에서 특허의 출원·허여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ARIPO 사무국은 우선 특허출원서의 방식 요건을 심사한다. 출원이 방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 ARIPO 사무국은 출원인에게 이를 통지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출원서를 보정하게 하며, 출원이 방식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출원서에 접수일을 부여하고 지정된 당사국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한다.⁴⁶⁾

39) 특허와 산업디자인에 관한 하라레 의정서(Harare Protocol) 제1조의2.

40) 특허와 산업디자인에 관한 하라레 의정서(Harare Protocol) 제2조 제3항.

41) 특허와 산업디자인에 관한 하라레 의정서(Harare Protocol) 제2조 제4항.

42) 특허와 산업디자인에 관한 하라레 의정서(Harare Protocol) 제2조 제7항.

43) 특허와 산업디자인에 관한 하라레 의정서(Harare Protocol) 제2조의2 제1항.

44) 특허와 산업디자인에 관한 하라레 의정서(Harare Protocol) 제2조의3 제1항 및 제2항.

45) 특허와 산업디자인에 관한 하라레 의정서(Harare Protocol) 제2조의4.

46) 특허와 산업디자인에 관한 하라레 의정서(Harare Protocol) 제3조 제2항.

다음으로 ARIPO 사무국은 출원에 대해 실체 심사를 실시하는데, 유럽특허청 등 외국 관할청에 실체 심사를 의뢰하기도 하며,⁴⁷⁾ 여하한 기술 분야에서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에 대해 ARIPO 특허를 허용한다.⁴⁸⁾

- ① 신규성 : 선행기술을 통해 예상되지 않는 발명⁴⁹⁾
- ② 진보성 : 해당 분야의 숙련된 기술자에게 명확하지 않은 발명⁵⁰⁾
- ③ 산업적 이용가능성 : 여하한 산업에서 제작·활용될 수 있는 발명⁵¹⁾

한편, 다음의 대상들은 특허 대상이 되는 발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⁵²⁾

- ① 발견, 과학적 이론, 수학적 방법
- ② 미학적 창작물
- ③ 정신적 활동, 사업 수행,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위한 계획·규칙·방법
- ④ 정보의 제공

그리고 다음과 관련된 발명에 대해서는 ARIPO 특허가 부여되지 않는다.⁵³⁾

- ① 그의 상업적 활용이 공공질서 혹은 도덕에 반하는 발명
- ② 식물, 동물의 품종에 관한 발명, 식물, 동물의 생물학적 생산에 관한 발명
- ③ 인간, 동물의 수술·치료·진단에 관한 방법

실체 심사를 통해 특허를 허용하기로 결정하면 ARIPO 사무국은 이를 출원인과 지정된 당사국에 통보하며, 지정된 당사국은 해당 특허허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국가에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이를 6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사무국에 통지할 수 있다.⁵⁴⁾

- ① 해당 발명이 하라레 의정서 규정에 따라 특허가 허용될 수 없는 경우, 혹은
- ② 해당 발명이 성질 상 지정국의 국내법에 따라 특허가 허용될 수 없는 경우

47) 특허와 산업디자인에 관한 하라레 의정서(Harare Protocol) 제3조 제3항.

48) 특허와 산업디자인에 관한 하라레 의정서(Harare Protocol) 제3조 제10항 (a)호.

49) 특허와 산업디자인에 관한 하라레 의정서(Harare Protocol) 제3조 제10항 (b)호.

50) 특허와 산업디자인에 관한 하라레 의정서(Harare Protocol) 제3조 제10항 (e)호.

51) 특허와 산업디자인에 관한 하라레 의정서(Harare Protocol) 제3조 제10항 (f)호.

52) 특허와 산업디자인에 관한 하라레 의정서(Harare Protocol) 제3조 제10항 (h)호.

53) 특허와 산업디자인에 관한 하라레 의정서(Harare Protocol) 제3조 제10항 (j)호.

54) 특허와 산업디자인에 관한 하라레 의정서(Harare Protocol) 제3조 제6항.

만약 지정된 당사국이 특허 효력을 부인하는 통지를 6개월 내에 하지 않을 경우 해당 특허는 지정된 당사국에서 효력을 발휘하며 ARIPO 사무국은 해당 특허를 공개한다.⁵⁵⁾

하지만, 방식 심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ARIPO 사무국이 실체 심사에서 특허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출원인에게 이를 통지하며, 출원인은 이에 대해 하라레 의정서 제4조의2에 의해 설치되는 항소기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⁵⁶⁾

이렇게 ARIPO 사무국으로부터 특허허여를 받은 특허는 지정된 당사국에서 해당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허여·등록된 특허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며, 출원서 접수일로부터 20년 동안 유효하다.⁵⁷⁾

다만, ARIPO 특허는 지정된 당사국에서 강제실시, 몰수, 혹은 공공 이익을 위해 특허발명에 적용되는 해당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서 처리되며,⁵⁸⁾ ARIPO 특허에 대한 침해는 지정된 당사국의 국내법에 의해 처리된다.⁵⁹⁾

한편, ARIPO 사무국은 특허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하고, 이러한 수수료를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들 사이에 분배한다.⁶⁰⁾ 따라서 출원인이나 특허권자가 납부하는 수수료는 지정된 국가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2024년 5월 현재 ARIPO 특허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표 2-11〉 ARIPO 하라레 의정서의 특허 수수료⁶¹⁾⁶²⁾

구 분	항 목	수수료
출원 단계	서면출원 수수료	290 USD
	전자출원 수수료 (20% 감면)	232 USD
	지정 수수료	(지정된 당사국 당) 85 USD
심사 단계	실체 심사 수수료	600 USD
	선행기술 조사 수수료	300 USD
	출원공개 수수료	350 USD
	출원공개 추가 수수료	(쪽수에 따라) 20 USD
	심사청구 수수료	(10개 초과한 청구항 당) 50 USD

55) 특허와 산업디자인에 관한 하라레 의정서(Harare Protocol) 제3조 제7항.

56) 특허와 산업디자인에 관한 하라레 의정서(Harare Protocol) 제3조 제5항.

57) 특허와 산업디자인에 관한 하라레 의정서(Harare Protocol) 제3조 제11항.

58) 특허와 산업디자인에 관한 하라레 의정서(Harare Protocol) 제3조 제12항.

59) 특허와 산업디자인에 관한 하라레 의정서(Harare Protocol) 제3조 제14항 (d)호.

60) 특허와 산업디자인에 관한 하라레 의정서(Harare Protocol) 제3조 제11항.

61) 하라레 의정서의 특허 수수료와 관련해, 특허권자는 ARIPO 특허의 유지를 위해 15년 동안 매년 전년 대비 20불 인상된 수수료를 지정된 국가 수에 따라 납부하며, 그 이후부터는 매년 전년 대비 50불 인상된 수수료를 지정된 국가 수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62) 하라레 의정서의 특허 수수료에 대하여는 다음의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기구(ARIPO) 웹사이트를 참조 : https://www.newaripo.online/storage/resources-fee-schedules/1674642452_phpNNhmf0.pdf (2024년 5월 30일 최종방문).

구 분	항 목	수수료
허여 단계	허여 수수료	350 USD
유지 단계	1년 차 유지 수수료	(지정된 당사국 당) 50 USD
	2년 차 유지 수수료	(지정된 당사국 당) 70 USD
	3년 차 유지 수수료	(지정된 당사국 당) 90 USD
	4년 차 유지 수수료	(지정된 당사국 당) 110 USD
	5년 차 유지 수수료	(지정된 당사국 당) 130 USD
	10년 차 유지 수수료	(지정된 당사국 당) 230 USD
	15년 차 유지 수수료	(지정된 당사국 당) 330 USD
	16년 차 유지 수수료	(지정된 당사국 당) 380 USD

하라레 의정서는 특허협력조약(PCT)을 통한 국제출원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특허협력조약(PCT)에 가입한 동 의정서의 당사국을 지정국으로 하여 특허출원되는 PCT 국제출원은 동 의정서에 따른 특허출원으로 간주되며,⁶³⁾ ARIPO 사무국은 지정관청(designated office) 역할을 담당한다.⁶⁴⁾

이러한 PCT 국제출원에 대하여는 하라레 의정서와 관련 시행규칙, 특허협력조약(PCT)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며, 이들 규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특허협력조약(PCT)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⁶⁵⁾

또한 동 의정서 당사국 거주자나 국민이 특허협력조약(PCT)을 통해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 ARIPO 사무국은 특허협력조약(PCT) 상 수리관청(receiving office)의 역할을 담당한다.⁶⁶⁾

(다) ARIPO 실용신안 절차

하라레 의정서는 ARIPO 실용신안과 관련해 제3조의3과 제3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우선 제3조의3에서 실용신안의 대상, 실용신안 등록 절차 등에 관해 규정하고 다음으로 제3조의4에서 실용신안 출원의 공개에 관해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동 의정서 상 실용신안이란 “일상용품, 전기·전자용품, 수공예품, 기구, 기계 장치, 혹은 이들의 구성품 등과 같은 기기, 도구, 기구를 이루는 요소들의 형태·구성·배치”로서 다음의 사항을 충족하는 것을 지칭한다.⁶⁷⁾

63) 특허와 산업디자인에 관한 하라레 의정서(Harare Protocol) 제3조의2 제2항.

64) 특허와 산업디자인에 관한 하라레 의정서(Harare Protocol) 제3조의2 제4항.

65) 특허와 산업디자인에 관한 하라레 의정서(Harare Protocol) 제3조의2 제2항.

66) 특허와 산업디자인에 관한 하라레 의정서(Harare Protocol) 제3조의2 제3항.

67) 특허와 산업디자인에 관한 하라레 의정서(Harare Protocol) 제3조의3 제1항.

- ① 여하한 혜택이나 새로운 효과에 이바지하는 것, 혹은
- ② 시간, 에너지, 노동을 절약시키는 것, 혹은
- ③ 대상물의 기능, 사용, 공정 등을 개선시키는 것, 혹은
- ④ 효용성 및 환경적 이점을 제공하는 것 등

그리고 실용신안이 동 의정서에 의거해 ARIPO 실용신안으로서 등록되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과 산업적 응용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⁶⁸⁾ 이러한 신규성과 산업적 응용 가능성은 ARIPO 특허하여 요건과 유사한 기준을 따르고 있다.

- ① 신규성 : 선행기술을 통해 예상되지 않는 실용신안
- ② 산업적 응용 가능성 : 여하한 산업에서 제작·활용될 수 있는 실용신안

ARIPO 실용신안 등록 절차는 특허하여 절차와 유사한데, 우선 ARIPO 사무국이 실용신안 출원의 방식 요건을 심사한다. 출원이 방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ARIPO 사무국은 이를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정해진 기간 이내에 보정하게 하며, 출원이 방식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출원서에 접수일을 부여하고 지정된 당사국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한다.⁶⁹⁾

다음으로 ARIPO 사무국은 출원에 대해 실체 심사를 실시하는데, 유럽특허청 등 외국 관할청에 실체 심사를 의뢰하기도 하며,⁷⁰⁾ 여하한 기술 분야에서 신규성, 산업적 응용 가능성이 있는 실용신안에 대해 등록 결정을 내린다.

실체 심사를 통해 실용신안 등록 결정을 내리면 ARIPO 사무국은 이를 출원인과 지정된 당사국에 통보하며, 지정된 당사국은 해당 실용신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국가에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이를 6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사무국에 통지할 수 있다.⁷¹⁾

- ① 해당 실용신안이 하라레 의정서 규정에 따라 등록될 수 없는 경우, 혹은
- ② 해당 실용신안이 성질 상 지정국의 국내법에 따라 등록될 수 없는 경우

68) 특허와 산업디자인에 관한 하라레 의정서(Harare Protocol) 제3조의3 제2항.

69) 특허와 산업디자인에 관한 하라레 의정서(Harare Protocol) 제3조의3 제4항.

70) 특허와 산업디자인에 관한 하라레 의정서(Harare Protocol) 제3조의3 제5항.

71) 특허와 산업디자인에 관한 하라레 의정서(Harare Protocol) 제3조의3 제8항.

지정된 당사국이 실용신안의 효력을 부인하는 통지를 6개월 내에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실용신안은 ARIPO 사무국에 의해 등록됨으로써 지정된 당사국에서 효력을 발휘하며 ARIPO 사무국은 해당 실용신안을 공개한다.⁷²⁾

하지만 특허하여 절차와 마찬가지로, ARIPO 사무국이 실제 심사에서 실용신안을 등록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출원인에게 이를 통지하며, 출원인은 이에 대해 하라레 의정서 제4조의2에 의해 설치되는 항소기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⁷³⁾

이렇게 ARIPO 사무국에 등록된 실용신안은 지정국에서 해당 국가 국내법에 따라 등록된 실용신안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며, 출원서 접수일로부터 10년 동안 유효하다.⁷⁴⁾ 다만, ARIPO 실용신안은 지정국에서 강제실시, 몰수, 공공 이익을 위한 사용에 적용되는 해당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서 처리될 수 있다.⁷⁵⁾

그리고 ARIPO 사무국은, 특허출원 공개와 마찬가지로, 실용신안의 출원일 혹은 우선권 주장일로부터 18개월 이후에 가능한 빨리 ARIPO 실용신안 출원을 공개해야 하며, 이러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실용신안의 등록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등록 결정과 동시에 해당 실용신안 출원을 공개해야 한다.⁷⁶⁾

한편, ARIPO 사무국은 실용신안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하고, 이를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들 사이에 분배한다.⁷⁷⁾ 따라서 출원인 혹은 권리자가 납부하는 수수료는 지정된 국가의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2024년 5월 현재 ARIPO 실용신안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표 2-12〉 ARIPO 하라레 의정서의 실용신안 수수료⁷⁸⁾⁷⁹⁾

구 분	항 목	수수료
출원 단계	서면출원 수수료	100 USD
	전자출원 수수료 (20% 감면)	80 USD
	지정 수수료	(지정된 당사국 당) 20 USD
등록 단계	등록·공개 수수료	50 USD

72) 특허와 산업디자인에 관한 하라레 의정서(Harare Protocol) 제3조의3 제9항.

73) 특허와 산업디자인에 관한 하라레 의정서(Harare Protocol) 제3조의3 제7항.

74) 특허와 산업디자인에 관한 하라레 의정서(Harare Protocol) 제3조의3 제11항.

75) 특허와 산업디자인에 관한 하라레 의정서(Harare Protocol) 제3조의3 제13항.

76) 특허와 산업디자인에 관한 하라레 의정서(Harare Protocol) 제3조의4.

77) 특허와 산업디자인에 관한 하라레 의정서(Harare Protocol) 제3조의3 제11항.

78) 하라레 의정서의 실용신안 수수료와 관련해, 실용신안 권리자는 ARIPO 실용신안의 유지를 위해 7년 동안 매년 전년 대비 5% 인상된 수수료를 지정된 국가의 수에 따라 납부하며, 그 이후부터는 매년 10%의 수수료를 지정된 국가의 수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79) 하라레 의정서의 실용신안 수수료에 대하여는 다음의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기구(ARIPO) 웹사이트를 참조 : https://www.newaripo.online/storage/resources-fee-schedules/1674642485_phpQ9GDti.pdf (2024년 5월 30일 최종방문).

구 분	항 목	수수료
유지 단계	1년 차 유지 수수료	(지정된 당사국 당) 20 USD
	2년 차 유지 수수료	(지정된 당사국 당) 25 USD
	3년 차 유지 수수료	(지정된 당사국 당) 30 USD
	4년 차 유지 수수료	(지정된 당사국 당) 35 USD
	5년 차 유지 수수료	(지정된 당사국 당) 40 USD
	6년 차 유지 수수료	(지정된 당사국 당) 45 USD
	7년 차 유지 수수료	(지정된 당사국 당) 50 USD
	8년 차 유지 수수료	(지정된 당사국 당) 10 USD

(라) ARIPO 산업디자인 절차

마지막으로 하라레 의정서는 ARIPO 산업디자인에 관해 제4조에서 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 의정서는 실용신안에 대하여는 정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산업디자인에 대해서는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ARIPO 산업디자인 등록 절차는 실용신안 절차와 유사한데, 우선 ARIPO 사무국이 출원의 방식 요건을 심사하고, 출원이 방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이를 출원인에게 통지해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하게 한다. 출원이 방식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출원서에 접수일을 부여하고 지정된 당사국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⁸⁰⁾

이때 산업디자인 출원에 대한 방식 요건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지정된 당사국은 해당 산업디자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국가에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이를 6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사무국에 통지할 수 있다.⁸¹⁾

- ① 해당 산업디자인이 신규성이 없는 경우, 혹은
- ② 해당 산업디자인이 직물 디자인으로서 특별 등록 대상인 경우, 혹은
- ③ 해당 산업디자인이 성질 상 지정국의 국내법에 따라 등록될 수 없는 경우

특허와 실용신안의 경우 지정된 당사국이 실체 심사 이후에 해당 특허 등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통지를 하는데 비해, 산업디자인의 경우엔 방식 심사 이후에 해당 산업디자인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통지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하라레 의정서는 산업디자인의 실체 심사에 관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지정된 당사국이 산업디자인의 효력을 부인하는 통지를 6개월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산업

80) 특허와 산업디자인에 관한 하라레 의정서(Harare Protocol) 제4조 제2항.

81) 특허와 산업디자인에 관한 하라레 의정서(Harare Protocol) 제4조 제3항.

디자인은 ARIPO 사무국에 의해 등록됨으로써 지정된 당사국에서 효력을 발휘하고, ARIPO 사무국은 해당 산업디자인을 공개한다.⁸²⁾

이렇게 ARIPO 사무국에 등록된 산업디자인은 지정국에서 해당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등록된 산업디자인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며 출원서 접수일로부터 15년 동안 유효하다. 다만, 지정국의 국내법 상 산업디자인 보호기간이 15년보다 짧을 경우 ARIPO 산업디자인에 대하여도 동일한 보호기간을 적용한다.⁸³⁾

한편, ARIPO 사무국은 산업디자인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하고, 이를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들 사이에 분배한다.⁸⁴⁾ 따라서 출원인 혹은 권리자가 납부하는 수수료는 지정된 국가의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2024년 5월 현재 ARIPO 산업디자인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표 2-13〉 ARIPO 하라레 의정서의 산업디자인 수수료⁸⁵⁾⁸⁶⁾

구 분	항 목	수수료
출원 단계	서면출원 수수료	50 USD
	전자출원 수수료 (20% 감면)	40 USD
	지정 수수료	(지정된 당사국 당) 10 USD
등록 단계	등록·공개 수수료	75 USD
유지 단계	1년 차 유지 수수료	(지정된 당사국 당) 10 USD
	2년 차 유지 수수료	(지정된 당사국 당) 12 USD
	3년 차 유지 수수료	(지정된 당사국 당) 14 USD
	4년 차 유지 수수료	(지정된 당사국 당) 16 USD
	5년 차 유지 수수료	(지정된 당사국 당) 18 USD
	6년 차 유지 수수료	(지정된 당사국 당) 20 USD
	7년 차 유지 수수료	(지정된 당사국 당) 24 USD
	8년 차 유지 수수료	(지정된 당사국 당) 28 USD
	10년 차 유지 수수료	(지정된 당사국 당) 36 USD
	11년 차 유지 수수료	(지정된 당사국 당) 42 USD

82) 특허와 산업디자인에 관한 하라레 의정서(Harare Protocol) 제4조 제4항.

83) 특허와 산업디자인에 관한 하라레 의정서(Harare Protocol) 제4조 제6항.

84) 특허와 산업디자인에 관한 하라레 의정서(Harare Protocol) 제4조 제6항.

85) 하라레 의정서의 산업디자인 수수료와 관련해, 산업디자인 권리자는 ARIPO 산업디자인 유지를 위해 6년 차까지 매년 전년 대비 2불 인상된 수수료를 지정국의 수에 따라 납부하고, 7년 차부터 10년 차까지는 매년 전년 대비 4불 인상된 수수료를 지정국의 수에 따라 납부하며, 그 이후부터는 매년 전년 대비 6불 인상된 수수료를 지정국의 수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86) 하라레 의정서의 산업디자인 수수료에 대하여는 다음의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기구(ARIPO) 웹사이트를 참조 : https://www.newaripo.online/storage/resources-fee-schedules/1667855746_Industrial-Designs-Fees.pdf.pdf (2024년 5월 30일 최종방문).

2 아프리카지식재산기구(OAPI)

1962년 9월 가봉 리브르빌(Libreville)에서 아프리카와 마다가스카르 지식재산청 창설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creation of the African and Malagasy Office of Industrial Property, Libreville Agreement)이 타결되었다.

하지만 마다가스카르 퇴회, 저작권 관할 확장 필요성으로 인해 리브르빌 협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대두했고, 이에 1977년 3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방기(Bangui)에서 리브르빌 협정의 개정 및 아프리카지식재산권기구(OAPI) 창설에 관한 협정(Bangui Agreement Instituting an African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이 새로 체결되었다.⁸⁷⁾⁸⁸⁾⁸⁹⁾

방기협정은 본문에서 아프리카지식재산권기구(OAPI) 기본원칙과 절차,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 조직 구성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총 10개의 부속서에서 특허, 상표, 산업디자인, 지리적표시, 식물신품종 등 지식재산 권리별 보호범위와 구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표 2-14〉 1977년 방기협정(Bangui Agreement)의 본문 구성

Parts	Sections	Articles
서 문		
제1부 일반조항	제1절 정의	제1조 정의
	제2절 기본원칙	제2조 기구의 의무와 책임
		제3조 지식재산청으로서 아프리카지식재산기구(OAPI)
		제4조 분쟁해결
		제5조 협정의 범위
		제6조 지식재산 권리별 부속서
		제7조 국제조약의 이행
	제3절 규칙 및 절차	제8조 출원 신청
		제9조 국내·국제 출원의 신청 및 등록
		제10조 내지 16조 특허, 상표, 산업디자인 등에 관한 절차
		제17조 기구 발간물
		제18조 지식재산권 등록사무소

87) Marius Schneider & Vanessa Ferguson,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Africa', Oxford Academic(2020), pp.44-56.

88) 1977년 3월 2일 체결된 아프리카지식재산권기구(OAPI) 창설에 관한 협정(Bangui Agreement Instituting an African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원문은 다음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웹사이트를 참조 : https://wipolex-res.wipo.int/edocs/lexdocs/treaties/en/oa002/trt_oa002.pdf (2024년 3월 16일 최종방문).

89) 2015년 12월 14일 개정된 아프리카지식재산권기구(OAPI) 창설에 관한 협정(Bangui Agreement Instituting an African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원문은 다음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웹사이트를 참조 : <https://www.wipo.int/wipolex/en/text/582620> (2024년 3월 16일 최종방문).

Parts	Sections	Articles
		제19조 다른 국제조약과의 관계
		제20조 사법 관할범위
제2부 회원국	제1절 회원 자격	제21조 내지 제22조 회원 자격 및 가입 절차
	제2절 권리와 의무	제23조 내지 제24조 회원국의 권리 및 의무
제3부 기구 구성		제25조 기구의 조직 구성
	제1절 행정이사회	제26조 내지 제30조 행정이사회 구성 및 기능
	제2절 최고위원회	제31조 최고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3절 사무총장	제32조 내지 제33조 사무총장 선출 및 권한
		제34조 중재조정센터
제4부 기구 재정		제35조 내지 제36조 기구 재원 및 예산
제5부 부칙		제37조 내지 제38조 기구의 법인격, 특권 및 면제
		제39조 내지 제42조 서명, 비준, 발효 절차
	제1절 경과규정	제43조 내지 제45조 경과규정
	제2절 경과 및 최종 규정	제46조 의약품에 대한 경과규정
		제47조 개정 및 탈퇴

(1) OAPI 기본원칙 및 기구 구성

아프리카지식재산기구(OAPI) 본부는 카메룬의 야운데(Yaounde)에 소재하며,⁹⁰⁾ 2024년 3월 현재 카메룬 등 총 17개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에 속해 있다.⁹¹⁾

아프리카지식재산기구(OAPI)는 회원국의 국가 지식재산 관할청 역할을 수행하며, 파리협약⁹²⁾ 상 중앙사무소 역할을 담당한다.⁹³⁾ 아프리카지식재산기구(OAPI)는 또한 회원국을 대신해,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수리관청(receiving office), 지정관청(designated office) 역할⁹⁴⁾과 국제상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시스템 상 본국관청(office of origin), 지정국관청(designated office) 역할을 담당한다.⁹⁵⁾

90) Bangui Agreement Instituting an African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Act of Dec. 15, 2015, Article 39.

91) 아프리카지식재산기구(OAPI)의 회원국 현황은 다음의 아프리카지식재산기구(OAPI)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oapi.int/index.php/en/> (2024년 3월 16일 최종방문).

92)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of March 20, 1883, as subsequently amended, Article 12 (Special National Industrial Property Service).

93) Bangui Agreement Instituting an African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Act of Dec. 15, 2015, Article 3(1).

94) Bangui Agreement Instituting an African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Act of Dec. 15, 2015, Article 3(2).

95) Bangui Agreement Instituting an African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Act of Dec. 15, 2015, Article 3(3).

방기협정 상 아프리카지식재산기구(OAPI)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⁹⁶⁾

- ① 산업재산 보호 통합체계에 따른 공통 행정절차 실시 및 산업재산 서비스 제공
- ② 문화적·사회적 가치의 표현물로서 저작물의 보호 및 집중관리단체 창설 장려
- ③ 저작물 보호와 관련한 정보의 수집·조정·전파 및 회원국과의 공유
- ④ 효과적 지식재산 보호를 통한 회원국의 경제발전, 기술 혁신과 창의성 증진
- ⑤ 지리적표시, 전통문화표현물, 전통지식에 대한 보호 촉진
- ⑥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 및 훈련 제공
- ⑦ 지식재산 법률 및 국제조약의 이행에 관한 여하한 업무 수행

(2) OAPI 방기협정(Bangui Agreement) 부속서 주요내용

OAPI 방기협정은 총 10개의 부속서(Annex)를 통해 특허, 실용신안, 상표, 산업디자인 등 산업재산권별 출원·등록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특허에 관해 규정하는 부속서 I은 총 7개의 장과 8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15〉 1977년 방기협정(Bangui Agreement) 부속서 I 의 구성

구분	제목	Articles
제1장	일반조항	제1조 ~ 제5조
제2장	특허로 부여되는 권리	제6조 ~ 제12조
제3장	승인절차	제1절 특허출원 (제13조 ~ 제18조) 제2절 특허부여 (제19조 ~ 제28조) 제3절 추가증명서 (제29조 ~ 32조) 제4절 특허 및 추가증명서 관련 소통 및 공개 (제33조 ~ 제35조) 제5절 특허 및 계약 실시권의 이전·양도 (제36조 ~ 제42조)
제4장	무효, 취소 및 관련 조치	제1절 무효 및 취소 (제43조 ~ 제45조) 제2절 무효 또는 몰수 조치 (제46조 ~ 제48조)
제5장	비자발적 실시	제1절 불실시·종속특허에 대한 비자발적 실시 (제49조 ~ 제57조) 제2절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비자발적 실시 (제58조)
제6장	그 밖의 법적 절차	제1절 공통조항 (제59조 ~ 제61조) 제2절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제62조 ~ 제76조) 제3절 국경조치 (제77조 ~ 제78조)
제7장	기타조항, 경과조항 및 최종조항	제79조 ~ 제80조

동 부속서에 따르면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은 특허등록을 할 수 있는데, 산업상 이용가능성 요건과 관련해 발명의 경우는 제품, 과정 또는 그 사용과 관련되는 것,

96) Bangui Agreement Instituting an African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Act of Dec. 15, 2015, Article 2.

그리고 발명품의 경우에는 수공업, 농업, 어업 및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산업에서 만들어지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과학적 이론 및 수학적 방법, 순전히 정신적 활동의 수행, 단순 정보 제공, 컴퓨터 프로그램, 문학·건축·예술 작품 또는 기타 미적 창작물 등은 OAPI 특허를 받을 수 없고, 진단 방법을 포함해 수술 또는 요법으로 인체나 동물의 신체를 치료하는 방법도 OAPI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방기협정 상 OAPI 특허 출원은 다음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OAPI 특허를 출원하는 출원인은 OAPI 사무소에 출원서를 접수해야 하며, 회원국 등록관을 통해 출원할 경우에는 출원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출원 관련 사항이 OAPI 사무소로 전달되어야 한다.

- ① 파리협약을 통하지 않는 출원
- ② 파리협약을 통한 출원(출원일이 파리협약에 따른 최초 우선일 경우)
- ③ PCT에 따라 OAPI를 지정국으로 하는 국제 출원의 국내 단계 출원
- ④ 둘 이상의 발명을 원용하는 분할출원
- ⑤ 원래 특허의 발명에 대한 보정 또는 수정 사항의 추가 신청

분할출원과 관련해, 하나의 동일한 그룹으로서 발명의 통일성을 갖지 않는 출원은 분할하여 출원할 수 있는데, 이때 모든 출원서는 최초 출원서의 출원일과 제출일이 유지된다. 이러한 분할 출원은 특허 허여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등록 절차 심사, 이의 제기 등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에 가능하다.

OAPI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유효하며, 특허권자는 특허 유지를 위한 수수료를 매년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출원일 혹은 우선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OAPI는 등록된 특허를 공보를 통해 공개한다.

한편, OAPI는 ① 특허발명의 불실시(non-working), ② 종속 특허, ③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등록된 특허를 강제 실시할 수 있다.

〈표 2-16〉 방기협정 상 특허 강제실시의 요건

구분	세부내용
특허발명의 불실시	• 특허발명이 회원국 중 하나에서 실시되지 않고 있는 경우 • 특허발명의 사용이 합리적인 조건으로 보호 제품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 특허권자가 상업적 약관에 따른 실시권 부여를 거부함으로써 상업적 활동을 저해하는 경우
종속 특허	• 특허발명이 선행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는 실시될 수 없고 선행 특허권자가 실시를 거부할 경우
국가 비상사태	• 특허발명이 국가의 경제·공중보건·국방에 필수적인 경우 • 특허발명의 불실시 또는 불충분 실시가 국가의 요구를 충족하는 데 심각한 위험이 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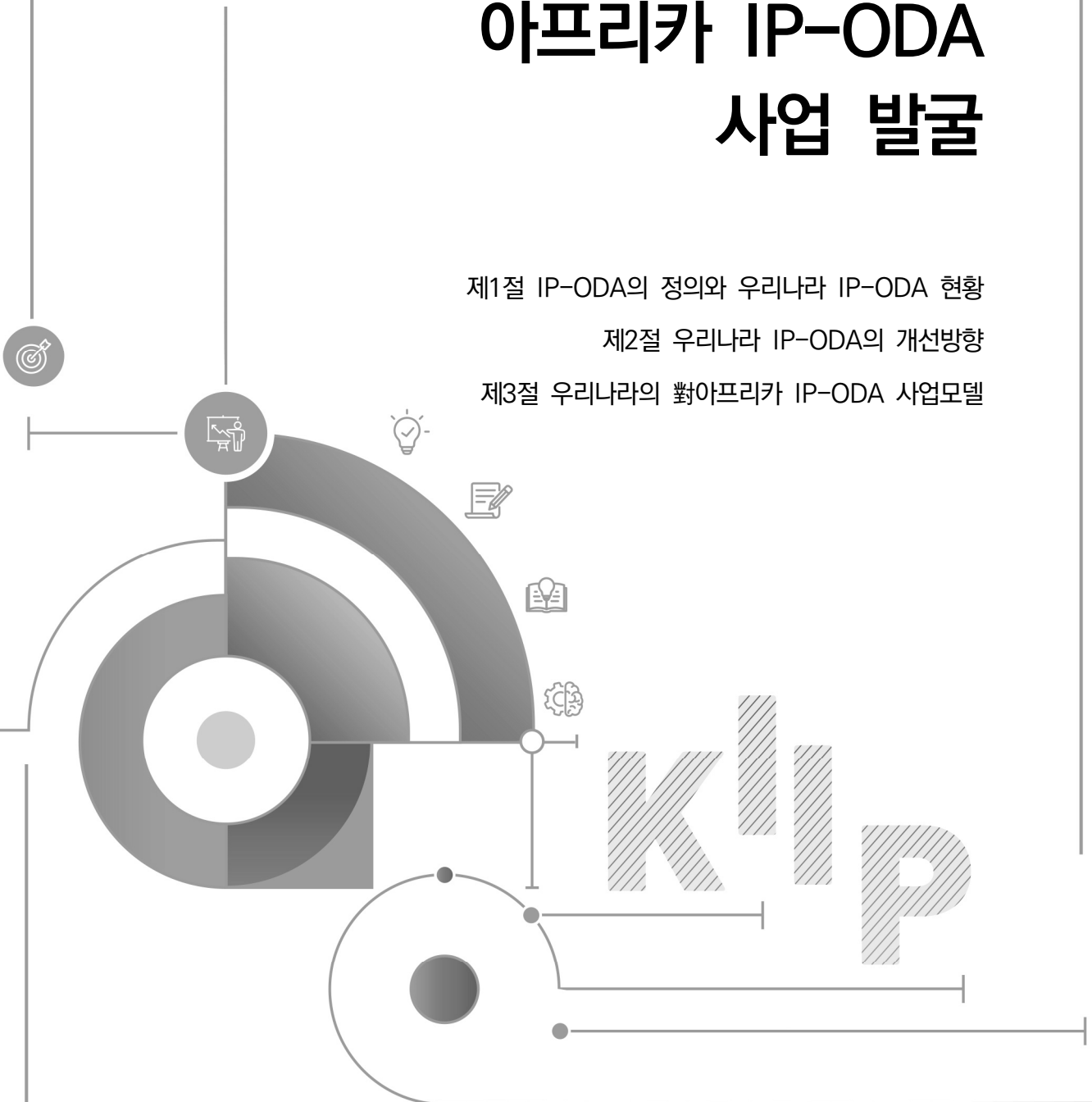
제3장

아프리카 IP-ODA 사업 발굴

제1절 IP-ODA의 정의와 우리나라 IP-ODA 현황

제2절 우리나라 IP-ODA의 개선방향

제3절 우리나라의 對아프리카 IP-ODA 사업모델



IP-ODA의 정의와 우리나라 IP-ODA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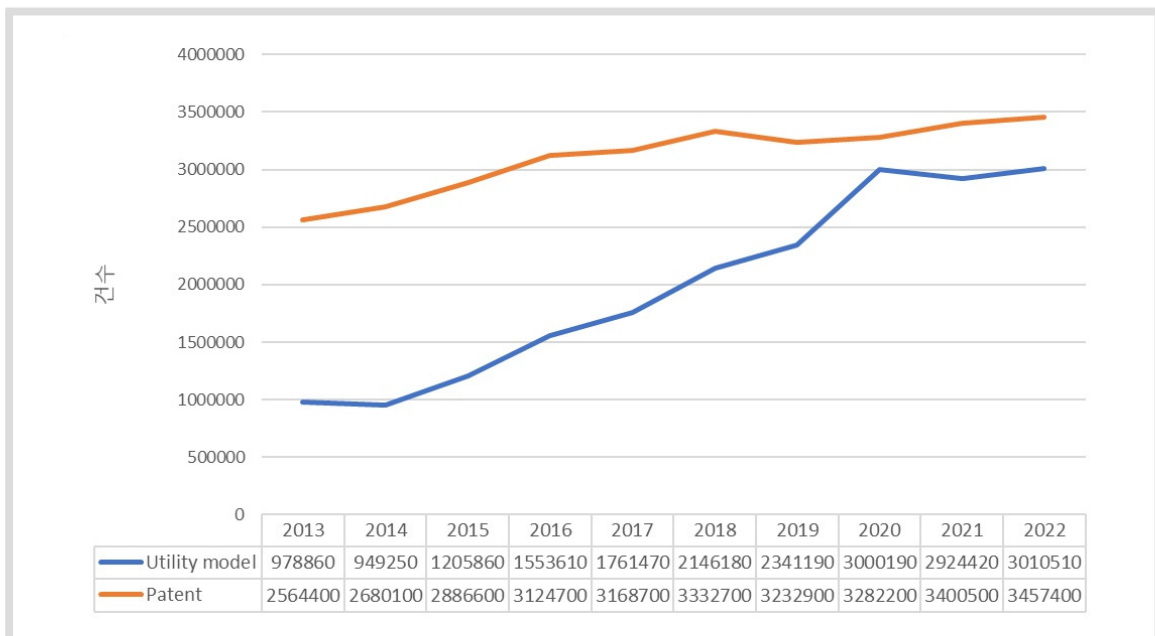


세계 주요국은 기술 개발을 통한 지식재산 확보가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국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국제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양자 간 협력뿐만 아니라 다자 간 협력을 통한 포괄적 지식재산 협력 체계 구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식재산 선진국으로 지식재산 글로벌 거버넌스를 선도하는 입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 국제협력을 추진해 왔는데, 국가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를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으로, 최근 기술 패권이 강화되면서 기술 선진국을 중심으로 주요국들이 경제안보 체제를 구축하고 있고, 이러한 경제안보 체제에서 지식재산권이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그림 3-1] 전 세계 특허출원 건수 추이



전 세계 특허출원 건수 추이에 관한 [그림 3-1]을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특허는 연평균 약 3%, 실용신안은 연평균 약 1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 세계 특허출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지식재산 격차(disparity)는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즉, 전 세계 특허출원에서 저소득 국가(low income countries)와 중하소득 국가(lower middle income countries)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2.03%, 2018년 1.83%, 2020년 2.13%에 불과하여 여전히 그 비중이 매우 낮다.

〈표 3-1〉 국가 소득 수준별 특허출원 건수⁹⁷⁾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 세계 특허출원 건수	2,215,100	2,251,400	2,386,300	2,239,200	2,311,500
High Income Countries	41.42%	40.48%	37.73%	40.20%	37.65%
Upper Income Countries	56.61%	57.42%	60.39%	57.60%	60.19%
Lower Income Countries	2.00%	2.10%	1.80%	2.20%	2.10%
Low Income Countries	0.03%	0.03%	0.03%	0.03%	0.03%

지식재산권 창출은 현재 뿐만 아니라 향후 국가의 경제발전과 산업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점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지식재산 격차(disparity)를 해소하고, 개발도상국들의 지식재산권 창출·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지식재산 개발 협력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

그러나 교육, 보건, 교통, 농촌개발, 에너지, 과학기술 등 다른 개발협력 분야와 비교하면 지식재산 개발 협력은 사업 유형과 예산 비중이 낮으며, 국제 개발 협력 사업에서 과학기술, 농촌개발, 에너지 등 다른 분야 사업의 세부내용으로 포함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지식재산 개발 협력의 경우 중장기 전략 방향, 전략 목표, 중점 사업, 협력 사업모델 등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아 장기적인 협력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⁹⁸⁾

이러한 지식재산 개발 협력 추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제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개발도상국이 경제발전과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지식재산 창출·활용 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지식재산 개발협력 사업을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지식재산 개발협력은 지식재산 선진국으로서 우리나라가 가진 경험과 강점을 활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분야 중 하나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제 지식재산 나눔 사업, 지식재산 활용 과학기술 지원 사업, 해외기관 지재권 컨설팅 사업, 국제 지재권 콘텐츠 개발 및 확산사업 등을 통해 지식재산 인식 제고를 위

97) 국가 소득 수준별 특허출원 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세계은행 웹사이트를 참조 : www.data.worldbank.org (2024년 9월 30일 최종방문).

98) 장태미, 한유진, “우리나라 지식재산 공적개발원조 추진 현황 및 제언”,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9), 이슈페이퍼 제 2019-8호, p.2.

한 개발협력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하에서는 지식재산 개발 협력의 개념을 정의하고, 지식재산 세부분야별 목표를 검토하였으며, 수혜국 유형에 따라 중점 협력국을 대상으로 국가별로 적합한 지식재산 개발 협력 추진방향을 도출하였다.

1 공적개발원조(ODA)의 개념

공적개발원조(ODA)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지정한 수원국(受援國)의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각종 공여를 지칭한다.

우리나라 국내법은 공적개발원조(ODA)에 관하여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협력대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따르면, 공적개발원조(ODA)에 해당하려면 차관이 양허성 있는 재원이어야 하고, 증여율이 25% 이상이어야 하며, 개발원조위원회(DAC)가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수원국 목록에 속해 있는 국가나 해당 국가를 수혜대상으로 하는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표 3-2〉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DAC)의 공적개발원조 개념⁹⁹⁾

구 분	세부내용
공여 주체	• 중앙·지방 정부 및 그 실시 기관
공여 목적	•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
증여율	• 양허성 있는(concessional) 재원이어야 하며, 증여율이 25% 이상일 것

2024년 9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DAC)가 지정한 수원국은 총 141개로, 개발원조위원회(DAC)는 이를 최빈개도국 45개, 저소득 국가 2개, 하위 중소득 국가 35개, 상위 중소득 국가 59개로 구분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DAC)가 소득 수준에 따라 수원국을 분류하는 기준은 2022년 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 국가의 경우 1인당 GNI \$1,005 이하, 하위 중소득 국가는 1인당 GNI \$1,006~\$3,955, 상위 중소득 국가는 1인당 GNI \$3,956~\$12,235이다.

99) 한유진 외, “개도국 지식재산분야 발전을 위한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및 IP-Divide 해소방안 연구” 특허청(2013), p.47.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DAC)의 공적개발원조(ODA)의 개념 및 수원국 목록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웹사이트를 참조 : <https://www.oecd.org/en/about/committees/development-assistance-committee.html> (2024년 9월 30일 최종방문).

〈표 3-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정한 공적개발원조 수원국 현황¹⁰⁰⁾

최빈개도국 (45)		저소득 국가 (2)	하위 중소득 국가 (35)		상위 중소득 국가 (59)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북한	알제리	몽골	알바니아	몰디브
방글라데시	베냉	시리아	부탄	모로코	아르헨티나	마셜제도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볼리비아	니카라과	아르메니아	모리셔스
캄보디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보베르데	나이지리아	아제르바이잔	멕시코
차드	코모로		카메룬	파키스탄	벨라루스	몰도바
콩고민주공화국	지부티		콩고공화국	파푸아뉴기니	몬테니그로	벨리즈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코트디부아르	필리핀	브스니아헤르체고비나	몬트세랫
감비아	기니		이집트	사모아	보츠와나	나미비아
기니비사우	아이티		에스와티니	스리랑카	브라질	나우루
키리바시	라오스		가나	타지키스탄	중국	니우에
레소토	라이베리아		온두라스	토켈라우	콜롬비아	북마케도니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인도	튀니지	코스타리카	팔라우
말리	모리타니		이란	우크라이나	쿠바	파나마
모잠비크	미얀마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도미니카 연방	파라과이
네팔	니제르		케냐	바누아투	도미니카공화국	페루
르완다	상투메프린시페		키르기스스탄	베트남	세인트헬레나	에콰도르
세네갈	시에라리온		레바논	짐바브웨	엘살바도르	세르비아
솔로몬 제도	소말리아		미크로네시아 연방		적도기니	수리남
남수단	수단				세인트루시아	피지
탄자니아	동티모르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가봉
토고	투발루				남아프리카공화국	조지아
우간다	예멘				그레나다	태국
잠비아					과테말라	통가
					가이아나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베네수엘라
					투르크메니스탄	이라크
					자메이카	코소보
					카자흐스탄	가자 지구
					왈리스푸투나	리비아
					말레이시아	

10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가 공적개발원조(ODA) 2024~2025년에 수원국으로 지정한 국가들의 명단은 다음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웹사이트를 참조 :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topics/policy-sub-issues/oda-eligibility-and-conditions/DAC-List-of-ODA-Recipients-for-reporting-2024-25-flows.pdf> (2024년 9월 30일 최종방문).

이렇게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공적개발원조(ODA) 수원국으로 지정된 국가들 중에 유엔에 속한 아프리카 국가는 총 53개로, 전체 수원국 중 약 37.6%를 차지하며, 세이셸을 제외하면 아프리카 지역의 모든 국가가 공적개발원조(ODA) 수원국에 해당된다.

〈표 3-4〉 경제협력개발기구 공적개발원조 수원국으로 지정된 아프리카 국가

아프리카 지역		국가 현황	
북부아프리카		최빈개도국	수단
		저소득 국가	-
		하위 중소득 국가	알제리, 이집트, 모로코, 튀니지
		상위 중소득 국가	리비아
사하라 이남	서부아프리카	최빈개도국	베냉, 부르키나파소,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라이베리아, 말리, 모리타니, 니제르, 세네갈, 시에라리온, 토고
		저소득 국가	-
		하위 중소득 국가	카보베르데, 코트디부아르, 가나, 나이지리아
		상위 중소득 국가	-
	중부아프리카	최빈개도국	앙골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콩고민주공화국, 상투메프린시페
		저소득 국가	-
		하위 중소득 국가	카메룬, 콩고공화국
		상위 중소득 국가	적도기니, 가봉
	동부아프리카	최빈개도국	부룬디, 코모로, 지부티,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잠비크, 르완다, 세이셸, 소말리아, 남수단, 우간다, 잠비아
		저소득 국가	-
		하위 중소득 국가	케냐, 짐바브웨
		상위 중소득 국가	모리셔스,
	남부아프리카	최빈개도국	레소토
		저소득 국가	-
		하위 중소득 국가	에스와티니,
		상위 중소득 국가	보츠와나,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2 우리나라 지식재산 공적개발원조(IP-ODA) 현황

우리나라는 2009년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DAC) 공식 회원국이 되었으며, 2023년 기준 GNI/ODA 비율이 0.17%로서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들의 평균인 0.3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원조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공적개발원조를 위한 최상위 국가 종합전략으로 5년마다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1년 1월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하였다.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은 “협력과 연대를 통한 글로벌 가치 및 상생의 국익 실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① 포용적 ODA, ② 상생하는 ODA, ③ 혁신적 ODA, ④ 함께하는 ODA의 4대 전략목표 및 12개 중점과제를 제시하고 있다.¹⁰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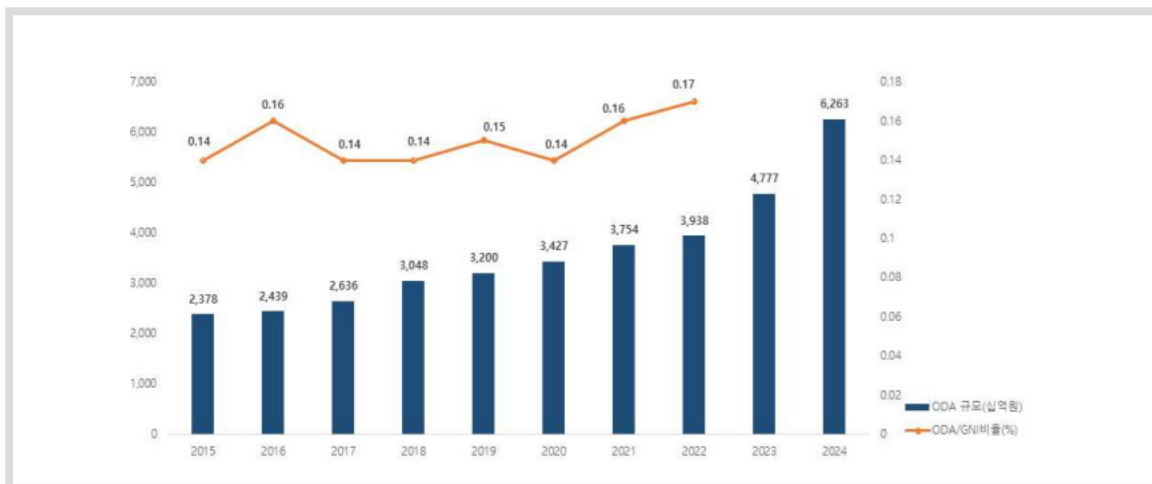
〈표 3-5〉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전략목표 및 중점과제

전략목표	중점과제
포용적 ODA	① 글로벌 보건 위협 대응 강화
	② 취약 분야 인조적 지원 확대
	③ 인간의 삶의 질 향상
상생하는 ODA	④ 경제·사회 발전기반 조성
	⑤ 녹색 전환 선도
	⑥ 대외정책과의 정합성 제고
혁신적 ODA	⑦ 수원국 혁신 역량 강화
	⑧ 개발협력 프로그램 혁신
	⑨ 개발협력 자원 다양화
함께하는 ODA	⑩ 시민사회 파트너십 강화
	⑪ 국제협력 고도화
	⑫ 개발협력 외연 확대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나라의 국제협력 사업 규모는 점차 증가하여 2024년 현재 약 6조 2,630억 원에 이르며, 46개 기관에서 1,976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01)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2021년 1월에 공표한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원문은 다음의 대한민국 국무조정실 웹사이트를 참조 : <https://www.odakorea.go.kr/kor/Main> (2024년 9월 30일 최종방문).

[그림 3-2]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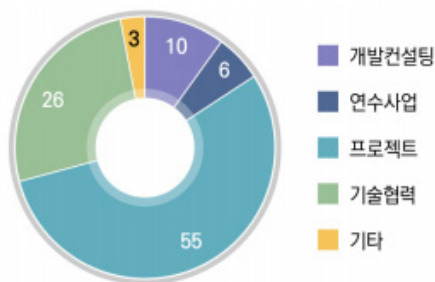
한편, 지식재산 분야의 경우 특허청을 중심으로 여러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식재산 ODA, 지식재산 국제협력, 지식재산 통상협력 등 지식재산 공적개발원조(IP-ODA)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구분·정립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특허청이 직접 운영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은 연간 20억 원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식재산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모델 개발 및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나라가 지난 10년 간 지식재산 부문에서 추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프로젝트, 연수사업, 개발컨설팅, 기술협력, 기타의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¹⁰²⁾¹⁰³⁾

〈표 3-6〉 지난 10년 간 우리나라 지식재산 공적개발원조(IP-ODA) 현황¹⁰⁴⁾

사업 세부유형	지원 규모	비 중
프로젝트	263.4억 원	55%
연수사업	28.9억 원	6%
개발컨설팅	45.9억 원	10%
기술협력	126.5억 원	26%
기 타	15.0억 원	3%



102) 김병연 외, “IP ODA 현황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제언: 단계적 IP ODA 추진 및 포괄적 협력체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4), IP Frontier 제2024-3호, pp.7-8.

103)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형태별로 국별 협력 사업, 글로벌 연수 사업,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 혁신적 개발협력 사업, 시민사회 협력 사업, 인도적 지원 사업, 국제기구 협력 사업, 국제질병퇴치기금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104) 김병연 외, “IP ODA 현황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제언: 단계적 IP ODA 추진 및 포괄적 협력체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4), IP Frontier 제2024-3호, pp.9-10.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식재산 공적개발원조(IP-ODA)의 사업 유형별 비중은 프로젝트가 총 263.4억 원으로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기술협력 약 126.5억 원, 개발컨설팅 45.9억 원, 연수사업 28.9억 원 순으로 구성되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프로젝트 유형의 지식재산 공적개발원조(ODA)는 다시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이 추진하는 시스템 구축 사업과 특허청이 추진하는 국제 지식재산 나눔 사업으로 구분된다.

〈표 3-7〉 지난 10년 간 지식재산 공적개발원조 중 프로젝트 사업 현황¹⁰⁵⁾

사업 세부유형	지원 규모	비 중	세부내용
시스템 구축 사업	139.6억 원	53%	• KOICA 국별 협력 사업 및 공공협력 사업 • 짐바브웨 특허행정 전산 인프라 개선사업 • 이집트 지식재산권 자동화시스템 개선사업 • 튀니지 산업재산권 행정 정보시스템 개선사업
국제 지식재산 나눔 사업	91.5억 원	35%	• 특허청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기 타	32.3억 원	12%	• 특허청 WIPO 분담금 등
총 계	263.4억 원	100%	

시스템 구축 사업은 주로 개발도상국에 특허행정 시스템을 수출·개선하는 사업이고, 국제 지식재산 나눔 사업은 적정기술을 개발·보급하거나 수원국 상품들에 대해 브랜드를 개발해 주는 사업이다.

〈표 3-8〉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중 프로젝트 사업 사례

구 분	사업 세부내용
특허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개발도상국 특허행정 현대화 국제협력 사업 (한국국제협력단)	• 몽골 지식재산권 현대화 사업 (2010~2012) - (지원내용) KIPO 특허넷을 활용해 몽골 특허행정시스템 구축 및 현대화 지원 - (지원방식) KOICA, 약 310만 불 규모의 ODA 사업 - (추진경과) 2011년 12월, 몽골 특허정보시스템 개통 • 짐바브웨/ARIPO 특허행정 전산인프라 개선 사업 (2013~2015) - (지원내용) KIPO '특허넷'을 활용해 ARIPO에 특허정보시스템 구축 - (참여기관) 한국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 - (지원방식) KOICA, 약 580만 불 규모의 ODA 사업 - (추진경과) 2015년 4월, ARIPO 특허정보시스템 개통 - (기대효과) 공보 발간 소요시간 단축(3주→2일), 온라인 출원 등 서비스 제고
KSP 시스템 컨설팅 사업 (수출입은행)	• 모잠비크 특허행정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 (2015) - (지원내용) KIPO 특허넷을 활용해 모잠비크 특허행정시스템 현대화 컨설팅 - (참여기관) 한국특허정보원 - (지원방식) 수출입은행 (기획재정부 KSP 사업)

105) 김병연 외, "IP ODA 현황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제언: 단계적 IP ODA 추진 및 포괄적 협력체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4), IP Frontier 제2024-3호, pp.9-10.

구 분	사업 세부내용
국제 지식재산 나눔 사업	
적정기술 개발·보급 (특허청, 발명진흥회)	• 우간다 “태양광 스마트제어 곡물 건조기” 적정기술 개발 (2017) - (지원내용) 농산물 건조기 개발 및 태양광을 이용한 스마트 제어기 보급 - (기대효과) 농산물 보관 농업기술을 향상시켜 수해국 식량문제 해결 기여 • 에티오피아 “벌통 및 채밀기” 적정기술 개발 (2020) - (지원내용) 전통 방식의 양봉 기술의 현대화 추진 - (기대효과) 벌꿀 양과 품질을 개선해 수해국 농가의 고부가가치 소득 창출
브랜드 개발·보급 (특허청, 발명진흥회)	• 차드 “건망고” 브랜드 개발 (2010) - (지원내용) 차드에게 건망고 상품의 브랜드를 개발 • 가나 “벌꿀” 브랜드 개발 (2014) - (지원내용) 가나 볼타지역양봉협회(VORAB)에게 벌꿀 상품의 브랜드를 개발 • 에티오피아 “벌꿀” 브랜드 및 인증마크 개발 (2020) - (지원내용) 에티오피아 오로미아 주정부에 벌꿀 상품의 브랜드, 인증마크 개발

연수사업은 개발도상국 인재 양성을 위하여 개도국 공무원, 기술자, 연구원, 정책결정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인적자원개발 사업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추진하고 있다.

개발컨설팅 사업은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경제발전공유(KSP) 사업의 일환으로 수원국에 대하여 지식재산과 관련한 법률 개정, 제도 개선, 정책 개발 등 지식재산 부문의 정책자문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동 사업은 교통, 과학기술 등 다른 분야와 달리 대부분 일회성으로 진행되고 있다.

〈표 3-9〉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중 개발컨설팅 사업 사례

구 분	사업 세부내용
경제발전경험공유(KSP) 사업	
KSP 정책자문 사업 (한국개발연구원)	• 라오스 지식재산권 기반 농업 발전을 위한 역량 구축 (2022~2023) - (참여기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케이엘피특허법률사무소 - (지원방식) 한국개발연구원 (기획재정부 KSP 사업) • 필리핀 지식재산 인력 양성 체계 구축 방안 (2021~2022) - (참여기관) 한국발명진흥회 - (지원방식) 한국개발연구원 (기획재정부 KSP 사업) • 우루과이 산업재산권 자동화시스템 리엔지니어링 지원 방안 (2021~2022) - (참여기관) 한국특허정보원 - (지원방식) 한국개발연구원 (기획재정부 KSP 사업) • ASEAN 회원국의 지식재산 인프라 강화 방안 (2018~2019) - (참여기관) 한국발명진흥회 - (지원방식) 한국개발연구원 (기획재정부 KSP 사업) • 칠레 지식재산권 행정정보화 시스템 구축 지원 방안 (2017~2018) - (참여기관) 한국특허정보원 - (지원방식) 한국개발연구원 (기획재정부 KSP 사업) • 방글라데시 지식재산 기반 강화 및 지리적표시 제도 운영방안 (2014~2015) - (참여기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지원방식) 한국개발연구원 (기획재정부 KSP 사업)

구 분	사업 세부내용
KSP 정책자문 사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사우디아라비아 혁신 스타트업 역량 강화 정책자문 (2022~2023) - (참여기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지원방식)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기획재정부 KSP 사업) • 이란 지식재산권 인프라 강화를 위한 정책자문 (2018~2019) - (참여기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지원방식)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기획재정부 KSP 사업)

한편, 기술협력 사업은 연간 약 10억 원 규모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분담금과 2023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된 약 42억 원 규모의 국제 지식재산 나눔 사업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 IP-ODA의 개선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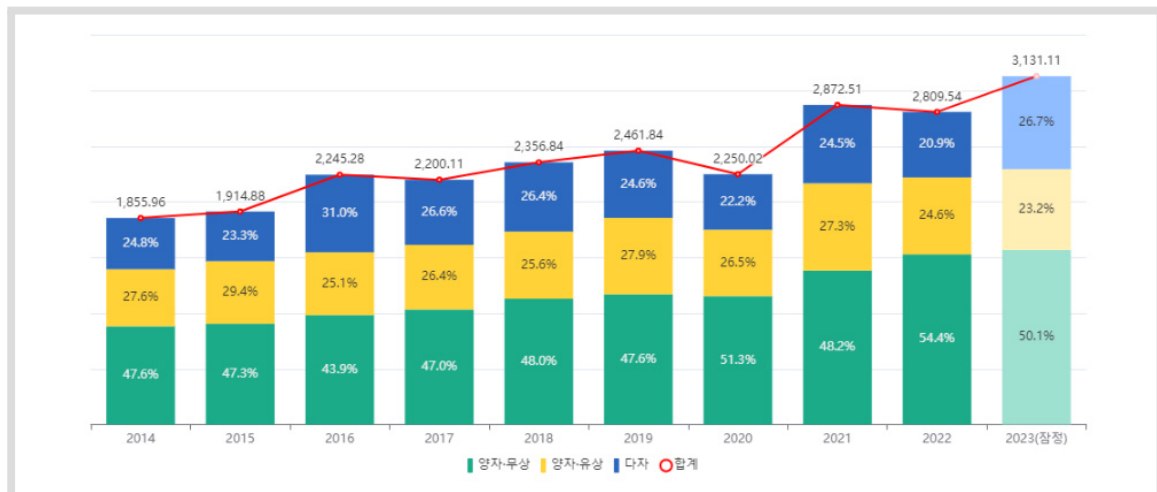
1 우리나라 IP-ODA의 문제점

(1) 낮은 정책 우선순위와 예산 규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지식재산 공적개발원조(IP-ODA)는 정책 우선순위가 낮고 예산 규모도 매우 작은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재원은 순지출 기준 2015년 1,915백만 불에서 2019년 2,540백만 불로 5년 간 연평균 약 7.3%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¹⁰⁶⁾ 2022년에는 증여등가액 기준 약 2,810백만 불을 기록하는 등 계속 증가해 왔다.

[그림 3-3]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및 유형별 비중¹⁰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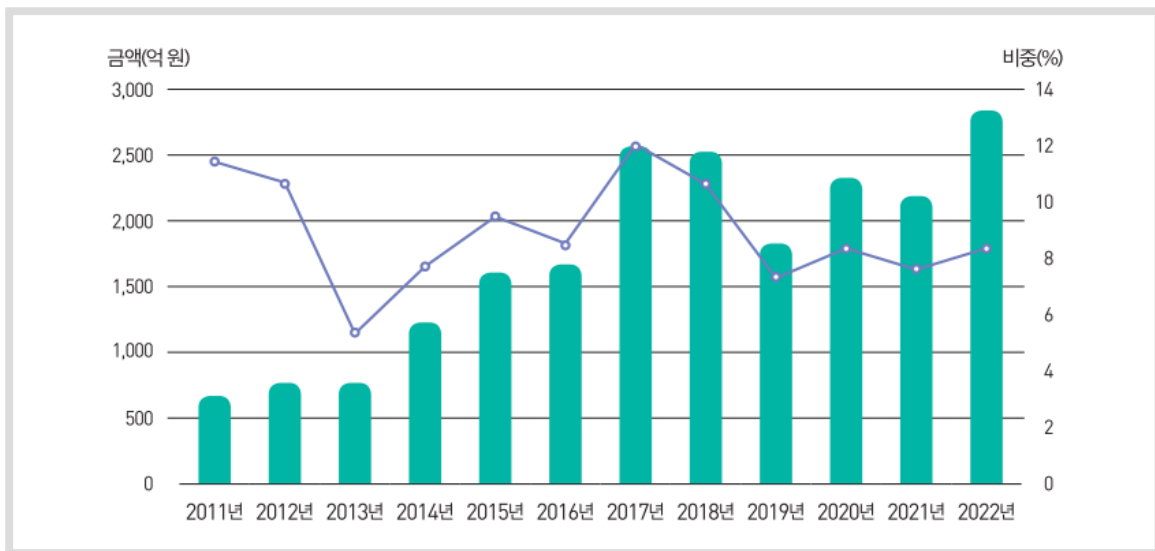
106) 대한민국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 관계부처 합동(2021),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2021년 1월에 공표한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원문은 다음의 대한민국 국무조정실 웹사이트를 참조 : <https://www.odakorea.go.kr/kor/Main> (2024년 9월 30일 최종방문).

107) 우리나라의 연도별 공적개발원조(ODA) 규모와 유형별 비중에 관하여는 다음의 대한민국 국무조정실 웹사이트를 참조 : <https://www.odakorea.go.kr/statistic/main#/tileLayout> (2024년 9월 30일 최종방문).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에서 공공행정 분야의 예산도 2015년 약 1,615억 원에서 2019년 1,833억 원으로 약 13.5% 증가하였으며, 2022년에는 2,8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1% 급증하였다.

하지만 공공행정 분야가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이래 여전히 10분의 1 이하 수준에 불과하다.

[그림 3-4] 우리나라의 공공행정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및 비중¹⁰⁸⁾



그리고 이러한 공공행정 분야에서 지식재산 공적개발원조(IP-ODA) 규모는 연간 약 40억 원 수준으로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공적개발원조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0.12%에 불과하다.

특히 지식재산 주무부처인 특허청이 직접 추진하는 공적개발원조(ODA)의 규모는 2022년 22.9억 원, 2023년 26.5억 원에 그치고 있고, 다자 차원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분담금을 제외한 양자 차원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2023년 기준 총 26.3억 원에 그친다.

공적개발원조(ODA)는 수원국의 인도주의적 요구나 기본적인 생활환경 및 인프라 개선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지식재산 부문을 포함한 공공행정 분야의 공적개발원조(ODA)가 정책적 우선순위를 얻기 어렵다.

특히 지식재산 부문은 국가 경제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지만, 선결적으로 수원국의 기본적인 경제사회적 환경과 인프라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최빈개도국에 해당하는 수원국들은 대부분 지식재산 업무를 전담할 독립된 정부기관이 없고 산업부 혹은 법무부 등의 하위부서에서 해당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108) 김경민, “국내 공공행정 ODA 동향 및 주요국별 전략”, 행정한류공공리더십연구실(2022), 글로벌 행정포럼 Vol.4, p.22.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공적개발원조(IP-ODA)는 수원국에게 특허행정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시스템 지원 사업이나 수원국의 환경·문화·사회·경제적 측면을 고려해 적은 비용으로 구현·유지가 용이한 적정기술을 개발·지원하는 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왔다.

(2) 연속성 및 중장기 방향성 부재

낮은 정책 우선순위와 예산으로 인해 지식재산 공적개발원조(IP-ODA)는 대부분 수원국의 일시적 수요를 반영해 단발성으로 추진된다. 그리고 사업이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추진되기 때문에 수원국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경제발전경험공유(KSP) 사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지식재산 정책자문의 경우 대부분의 수원국은 지식재산 전담부처가 없고 전문가도 부족하기 때문에 컨택포인트를 식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수원국의 실질적인 정책 수요를 파악하는 것도 결코 용이하지 않다. 이로 인해 수원국이 요청한 정책자문 주제들이 현지 실태조사 단계에서 변경되거나 사업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수원국에 대한 정책자문이 완료된 이후 해당 수원국이 정책자문을 활용한 성과를 추적하거나 해당 정책자문과 관련한 수원국의 후속 요청을 수용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는 특허정보시스템 구축 등과 같이 과업 범위가 명확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드러난다. 즉, 사업이 단발성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시스템 유지보수,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과 같은 추가의 지원 과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¹⁰⁹⁾

특허청의 국제 지식재산 나눔 사업의 경우 적정기술 보급 및 브랜드 개발이라는 과업을 연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매년 다른 수원국을 선정해 지원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수원국에 대한 효과적인 사후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 국제 지식재산 나눔 사업의 자체평가 보고서에서는 사업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가 과업 구성 및 다년도 사업 운영이 여러 차례 제안되었으며, 특허청은 적정기술 개발 사업의 경우 3년의 사업기간을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

〈표 3-10〉 특허청 지식재산 나눔 사업의 자체평가 보고서 요약¹¹⁰⁾

사업연도	수원국	자체평가 보고서 주요내용
2012	네팔	• 단년도로 수행되어 기술개발, 실증, 보급 및 확산 등에 한계 존재
2016	인도네시아	• 단년도로 수행되어 시간·예산적 제약 존재, 다년도로 운영 필요

109) 김병연 외, “IP ODA 현황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제언: 단계적 IP ODA 추진 및 포괄적 협력체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4), IP Frontier 제2024-3호, p.15.

110) 김병연 외, “IP ODA 현황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제언: 단계적 IP ODA 추진 및 포괄적 협력체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4), IP Frontier 제2024-3호, p.16.

사업연도	수원국	자체평가 보고서 주요내용
2017	우간다	• 단년도로 수행되어 사업 효과성 증대를 위한 후속 사업 필요
2019	스리랑카	• 다년도 패키지형 사업 시행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 제고 필요
2021	필리핀	• 중장기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후속 연계사업 모색 필요 • 단년도(적정기술 개발)와 다년도(R&D 역량 제고) 사업의 연계 필요

〈표 3-11〉 최근 3년간 특허청 지식재산 나눔 사업의 세부사업 현황

사업기간	수원국	내역사업명	총 사업예산
2023	몽골	적정기술·브랜드 개발 지원 몽골 울란바타르시 지속가능한 울 의류 및 수공예 제품 품질 및 생산량 향상을 위한 제작 기술 및 브랜드 지원을 통한 소득 증대 사업	3.40억 원
2023	페루	적정기술·브랜드 개발 지원 페루 비야리카 지역 커피 열매 습식 가공 및 건조 기술 최적화	3.40억 원
2023	필리핀	적정기술·브랜드 개발 지원 필리핀 마린두케 지역의 카카오 가공설비 개선	3.40억 원
2023	키르기스스탄	적정기술·브랜드 개발 지원 스마트제어기, 수경재배 가능 온실 및 브랜드 개발 사후관리	0.63억 원
2023	필리핀	적정기술·브랜드 개발 지원 필리핀 우라로 녹말추출기 및 이동장치 적정기술 개발 사후관리	0.63억 원
2023/2025	도미니카공화국	지식재산 혁신 기반 농업기술 개발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주요 농작물 재배용 농업기기 및 브랜드 지원	9.20억 원
2022/2024	파키스탄	지식재산활용 과학기술지원 편자브주 안전한 음용수 공급을 위한 지속가능한 지하수 처리기술 적용 사업	1.50억 원
2022/2024	우즈베키스탄	지식재산활용 과학기술지원 우즈베키스탄 양봉 생산성과 강건성 증진 꿀벌-병해충 통합관리 기술 개발	1.50억 원
2021/2023	몽골	지식재산활용 과학기술지원 몽골 울란바타르시 자동차 매연절감 기술개발 사업	1.50억 원
2021/2023	베트남	지식재산활용 과학기술지원 베트남 가족 강건성 향상 유전체 기술개발 사업	1.50억 원

요컨대, 지식재산 부문의 공적개발원조(IP-ODA)는 낮은 정책 우선순위와 예산으로 인해 대부분 단발성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중장기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되기 어렵고 수원국의 후속 요청 등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이는 수원국과 지식재산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수원국 입장에서도 산업발전과 국가 경쟁력의 토대가 될 지식재산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실질적인 지원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

(3) 종합적·체계적 사업모델의 부재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공적개발원조(ODA)는 유형에 따라 프로젝트, 연수사업, 개발컨설팅, 기술협력 등으로 나누어지며, 사업 주체에 따라 기획재정부, 특허청,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여러 기관들이 사업을 담당한다.

그리고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경제발전공유사업(KSP)의 경우 세부 사업내용에 따라 이를 수출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개발연구원이 각각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 기관이 지식재산 공적개발원조(IP-ODA)를 추진함으로써 각 기관의 사업 내용이 수원국을 달리하여 중복되거나 혹은 동일한 수원국에게 유사한 공적개발원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하다.

예를 들어, 수원국에 지식재산 정책 컨설팅을 제공하는 경제발전경험공유(KSP) 사업의 경우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과업을 방글라데시에 대하여는 한국개발연구원이 추진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등에 대하여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추진하였다.

또한, 수원국에 특허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공적개발원조(ODA)의 경우 몽골, 짐바브웨에 대해서는 한국국제협력단이 개발도상국 특허행정 현대화 국제협력 사업을 통해 추진하고, 모잠비크에 대하여는 수출입은행이 경제발전경험공유(KSP) 시스템 컨설팅 사업을 통해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여러 기관의 지식재산 공적개발원조(IP-ODA) 참여는 과업 내용에 따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고, 과학기술, 공공행정 등 다른 부문의 사업들과 연계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 공적개발원조(IP-ODA) 재원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 기관들이 지식재산 공적개발원조(IP-ODA)에 관여함으로써, 앞서 언급한 사례와 같이, 하나의 수원국에 여러 사업들이 중복적으로 추진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여러 기관들이 추진하여 체계적 지식재산 공적개발원조(IP-ODA)를 추진하는데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이는 지식재산 공적개발원조(IP-ODA)의 중장기 방향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원국과의 지식재산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파트너십을 유지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인식 제고, 법제도 개선, 정보시스템 구축, 정책 개발, 전문 인력 양성 등 지식재산 생태계를 순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수원국을 시기적절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련 사업들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컨트롤타워가 수원국의 경제발전 수준과 산업 환경을 심층 검토해 수원국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에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게 경제성장 단계별 사업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4) 특정 지역에 대한 지원 편중

우리나라는 수원국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국가협력 전략을 수립하고 중장기 개발협력 방향성을 제시해 공적개발원조의 효과를 제고하고자 공적개발원조를 이행할 중점협력국을 선정하고 수원국별로 국가협력전략(CPS)을 수립·추진하고 있다.¹¹¹⁾

동 국가협력전략(CPS)은 중점협력국에 대한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지원 목표, 중점협력 분야, 지원계획 등을 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의 중점협력국은 2024년 9월 현재 총 27개국이다.

중점협력국의 지리적인 배분 현황을 살펴보면, 아시아 12개국, 아프리카 7개국, 중동 및 독립국가연합(CIS) 4개국, 그리고 중남미 4개국으로 전체 중점협력국 중 아시아 국가는 약 44.5%, 아프리카 국가는 약 25.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3-12〉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국 현황

아시아 (12)	아프리카 (7)	중동 및 CIS (4)	중남미 (4)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키르기스스탄	볼리비아
캄보디아	가나	우즈베키스탄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이집트	우크라이나	파라과이
라오스	르완다	타지키스탄	페루
몽골	세네갈		
미얀마	탄자니아		
네팔	우간다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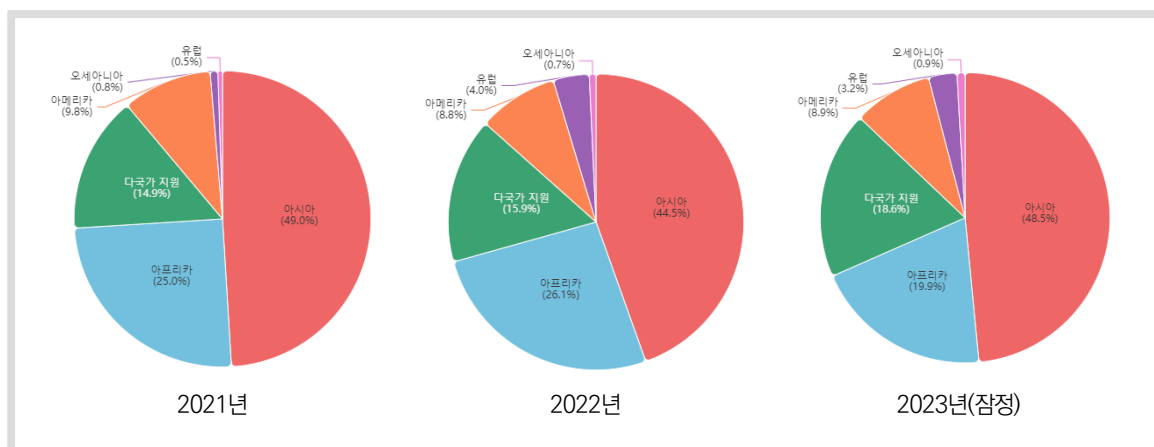
하지만 아프리카 지역의 54개 국가 중에서 세이셸을 제외한 53개 국가들이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공적개발원조(ODA) 수원국으로 지정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국 중 아프리카 국가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111)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국 현황 및 중점협력국별 국가협력전략(CPS)의 세부내용은 다음의 대한민국 국무조정실 웹사이트를 참조 : https://www.odakorea.go.kr/kor/cont/ContShow?cont_seq=22 (2024년 9월 30일 최종방문).

그리고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국을 아프리카 권역별로 살펴보면, 동부 아프리카 국가들이 4개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서부 아프리카 국가 2개, 북부 아프리카 국가 1개의 순이며, 중부 아프리카와 남부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중점협력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 지역별 공적개발원조(ODA) 비중을 살펴보다도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원조 금액이 증여등가액 기준 2022년에 약 44.5% 비중을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2023년에는 전체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48.5%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림 3-5] 최근 3년간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의 지역별 비중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가 아시아 지역에 편중된 것은 아시아에서 거버넌스를 확대하려는 신남방·신북방 정책 등에 따라 아시아 중심 지원을 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¹¹²⁾

하지만 아프리카가 풍부한 자원과 내수시장, 노동인구 증가¹¹³⁾ 등 잠재력이 높고 경제성장률이 2000년대에 연평균 약 5%를 기록한 이래 여전히 3~4%를 유지하는¹¹⁴⁾ 등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아프리카 지역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매개로서 對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ODA)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 정부는 지난 2024년 6월 개최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 경제협력의 초석으로 2030년까지 對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ODA)를 100억 불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2023년 2월 발표한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에서 아프리카에 대한

112) 우리나라는 공적개발원조(ODA)의 지역별 배분에 있어서 아시아 중심 지원 및 아프리카 비중 확대를 목표로 아시아 47~52%, 아프리카 25~27%, 중남미 9~12% 순으로 아시아 중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제3차 국제개발협력 중합기본계획(2021-2025)”, 제2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 제36-1호, 관계부처 합동(2021), p.2.

113)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 United Nations(2022), p.4.

114) African Development Bank Group, “African Economic Outlook 2023 : Mobilizing Private Sector Financing for Climate and Green Growth in Africa”, African Development Bank(2023), p.3.

공적개발원조(ODA)를 약 5,400억 원을 기록했던 2019년 대비 2배 이상 확대하기로 결정했다.¹¹⁵⁾

한편 우리나라 국가별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지원한 국가는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등이며, 아프리카 국가 중에 에티오피아와 탄자니아가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다.

〈표 3-13〉 우리나라의 국가별 공적개발원조 규모

(증여등가액 기준, 단위 : 백만 불)

순	2021년		2022년		2023년(잠정)	
1	방글라데시	212.17백만 불	에티오피아	124.99백만 불	방글라데시	174.87백만 불
2	필리핀	130.41백만 불	캄보디아	124.53백만 불	베트남	110.64백만 불
3	캄보디아	113.66백만 불	베트남	109.83백만 불	캄보디아	108.20백만 불
4	베트남	97.65백만 불	필리핀	101.58백만 불	인도네시아	104.87백만 불
5	에티오피아	82.94백만 불	방글라데시	87.89백만 불	필리핀	91.55백만 불
6	이집트	64.39백만 불	우크라이나	78.51백만 불	에티오피아	78.29백만 불
7	라오스	62.26백만 불	라오스	74.89백만 불	라오스	66.25백만 불
8	인도네시아	62.13백만 불	인도네시아	68.60백만 불	몽골	63.36백만 불
9	콜롬비아	60.77백만 불	몽골	64.95백만 불	엘살바도르	53.16백만 불
10	탄자니아	54.72백만 불	탄자니아	58.89백만 불	우크라이나	53.00백만 불

2 우리나라 IP-ODA 개선방향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지식재산 공적개발원조(IP-ODA)는 정책 우선순위가 낮고 예산 규모가 작아서 대부분 단발성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수원국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고 수원국과 지식재산 협력 체계 및 파트너십을 구축·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여러 기관들이 지식재산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개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사업의 중복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종합적·체계적인 지식재산 공적개발원조(IP-ODA) 사업모형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한편으로, 아프리카 지역의 거의 모든 국가가 최빈개도국 혹은 중위소득 국가로서 공적개발원조(ODA) 대상이지만,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는 아시아 국가들에 편중되고 있고 중점협력국 중에 아프리카 국가는 2개에 불과하다.

115)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2023년 2월에 발표한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안)”의 원문은 다음의 대한민국 국무조정실 웹사이트를 참조 : [file:///C:/Users/%EB%AC%B8%EB%B3%91%ED%98%B8/Downloads/\(%EC%A0%9C44-2%ED%98%B8\)+%EC%95%84%ED%94%84%EB%A6%AC%EC%B9%B4+%EA%B0%9C%EB%B0%9C%ED%98%91%EB%A0%A5%EC%A0%84%EB%9E%B5.pdf](file:///C:/Users/%EB%AC%B8%EB%B3%91%ED%98%B8/Downloads/(%EC%A0%9C44-2%ED%98%B8)+%EC%95%84%ED%94%84%EB%A6%AC%EC%B9%B4+%EA%B0%9C%EB%B0%9C%ED%98%91%EB%A0%A5%EC%A0%84%EB%9E%B5.pdf) (2024년 9월 30일 최종방문).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공적개발원조(IP-ODA)는 지리적 편향성을 극복해 신흥시장으로 부상하는 아프리카 지역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고, 중장기 관점에서 수원국의 경제발전 등을 고려해 종합적·체계적으로 접근하여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

하지만 수원국들은 대부분 경제·법률·산업·교육 등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식재산 공적개발원조(IP-ODA) 자체만으로는 수원국 경제성장과 산업 발전을 이끌 유일한 요인이 될 수 없고, 수원국 주력 산업이나 교육 시스템 등과 연계해 지식재산권을 창출·활용하는 부가적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요컨대, 지식재산 공적개발원조(IP-ODA)는 궁극적으로 지식재산을 통해 수원국의 경제발전을 견인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지식재산 격차(disparity)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1) 수원국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

지식재산 제도와 시스템은 해당 국가의 경제발전 수준, 산업 형태, 교육 수준 등과 밀접히 관련이 있다. 따라서 수원국의 경제발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수원국에 적합한 지식재산 공적개발원조(IP-ODA)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도 경제발전 수준 및 산업 형태 변화에 따라 지식재산권 제도가 도입기, 정착기, 발전기, 성숙기를 거치며 고도화되어 왔다.¹¹⁶⁾ 따라서 수원국의 여건을 우선적으로 분석해 단계적으로 적합한 지식재산 공적개발원조(IP-ODA)를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

〈표 3-14〉 산업 발전 단계별 수원국의 지식재산 환경 수준 진단¹¹⁷⁾

산업발전 단계	기술 역량	수원국 지식재산 환경	지식재산 정책 방향
기반 형성	- 생산기반 구축, 수입기술 의존 - 경공업 중심의 성장산업	- 지식재산 대중 인식 부족 - 지식재산 전담기관과 인프라 부재 - 전문가 및 기술 부족, 낮은 출원량	- 지식재산 인식 제고 - 지식재산 창출·발명 교육 - 미활용 특허기술 이전
고도 성장	- 자력갱생 및 수입대체 생산 - 중화학, 전자, 자동차 등	- 출원량 증가에 따른 심사인력 부족 - 전자출원 및 특허정보시스템 부재 - 위조상품 유통, 기술탈취 증가	- 지식재산 제도 도입 - 지식재산 국제레짐 편입 - 지식재산 인프라 강화
산업 전환	- 우수기술 개발, 수출 촉진 - 전자, 반도체 등 첨단산업	- 양질의 지식재산 창출 수요 - 지식재산 활용 역량 강화 수요 - 지식재산서비스 인프라 미흡	- 전략적 지식재산 정책 추진 - 지식재산 행정시스템 개선 - 지식재산 전문기관 육성

116) 김병연 외, “IP ODA 현황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제언: 단계적 IP ODA 추진 및 포괄적 협력체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4), IP Frontier 제2024-3호, p.23.

117) 산업발전 단계의 구분은 우리나라의 산업발전 과정을 바탕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러한 산업발전 단계 및 기술역량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신지연 외, “한국의 산업발전 단계별 지식재산권 제도·정책의 정비 및 활용사례: 특허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2). pp.23-31. 참조.

대부분의 수원국은 산업발전 기반을 형성하는 단계로서 소비재 등의 생산을 위한 경공업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기술 발명을 통한 혁신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특허,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대중 인식이 매우 부족하고 내국인의 특허,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건수가 매우 적다.

이런 환경에서 수원국은 산업재산권 업무를 처리할 별도의 전담기관을 두지 않고 산업부나 법무부 등에서 산업재산권 관련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아프리카의 ARIPO 등과 같이 지식재산 지역기구를 통해 산업재산권 업무를 공동 처리하는 사례도 있다.

따라서 산업발전 기반 형성 단계에 있는 수원국에게 선진국의 지식재산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시키거나 특허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수원국이 지속가능한 지식재산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

산업발전 기반 형성 단계의 수원국에서 지식재산이 혁신의 원동력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혁신을 이끌 발명가의 양성과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는 대중 인식의 제고가 선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수원국의 중점산업이나 전통산업을 고려하여 국내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특허법, 상표법, 지리적표시법, 유전자원법 등의 산업재산권 법률을 마련·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기본적인 산업재산권 법률을 마련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나 다국적기업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수원국이 식량, 보건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적정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외국의 미활용 특허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원조할 필요가 있다.

〈표 3-15〉 산업 발전 단계별 지식재산 공적개발원조(IP-ODA) 사업내용¹¹⁸⁾

산업발전 단계	수원국 지식재산 정책 방향	수원국에 적합한 IP-ODA 사업내용
기반 형성	- 지식재산 인식 제고 - 지식재산 창출·발명 교육 - 미활용 특허기술 이전	- 인도적 차원의 적정기술 개발·보급, 외국 미활용 특허기술 활용 - 청소년 발명교육(STEM 교육 연계), 여성 발명가 교육 - 지식재산 대중 인식 제고(캠페인, 모범사례 확산) - 국내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재산권 법률 마련·정비
고도 성장	- 지식재산 제도 도입 - 지식재산 국제레짐 편입 - 지식재산 인프라 강화	- 글로벌 기준에 따른 산업재산권 법률 정비 및 국제조약 가입 - 심사관 교육, 공무원(법무부, 관세청 등) 지식재산 심화 교육 - 국가 지식재산 전략 수립 및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지원 - 기업 지식재산 컨설팅, 지식재산 실태조사 - 전자출원 및 특허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교육
산업 전환	- 전략적 지식재산 정책 추진 - 지식재산 행정시스템 개선 - 지식재산 전문기관 육성	- 지식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전략적 지식재산 정책 수립 - 부정경쟁, 영업비밀 탈취 등 관리체계 구축 - 지식재산 서비스 등 전문기관 육성 지원 - 기업 지식재산 창출·활용 컨설팅(IP-R&D), 기술 사업화 교육

118) 산업발전 단계의 구분은 우리나라의 산업발전 과정을 바탕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러한 산업발전 단계 및 기술역량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신지연 외, “한국의 산업발전 단계별 지식재산권 제도·정책의 정비 및 활용사례: 특허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2). pp.23-31. 참조.

(2) 수원국 지식재산 활동 성향에 따른 맞춤형 사업 실시

수원국의 산업발전 단계에 따라 적합한 지식재산 공적개발원조(IP-ODA) 사업의 내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수원국의 지식재산 활동과 출원 성향은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이때 수원국에서 외국인의 지식재산 활동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즉, 수원국의 지식재산 활동과 출원 성향은 수원국에 실무적으로 필요한 지식재산 제도 및 행정 체계를 파악해 지식재산 공적개발원조(IP-ODA)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정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원국에서 내국인의 해외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경우 국제특허출원·등록을 위한 특허법 정비, 특허협력조약(PCT) 가입, 해외 특허출원 교육, 특허심사 하이웨이 구축 등을 지식재산 공적개발원조(IP-ODA)로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

수원국의 지식재산 활동과 출원 성향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여러 지표들을 설계·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저출원성향국(low propensity to IP), 중출원성향국(middle propensity to IP), 고출원성향국(high propensity to IP) 등으로 수원국들을 구분해 지식재산 공적개발원조의 사업내용을 정할 수 있다.

〈표 3-16〉 지식재산 활동 성향 등에 따른 수원국 분류 및 IP-ODA 사업내용

지식재산 활동 성향 등 평가	출원 성향	IP-ODA 사업내용
지식재산 활동 및 출원 성향		
① 최근 3년간 내국인 산재권 출원 건수	저출원 성향국	▶ 청소년 발명교육, 여성 발명가 교육 ▶ 지식재산 대중 인식 제고(캠페인, 모범사례 확산) ▶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산업재산권 법률 정비
② 최근 3년간 외국인 산재권 출원 건수		
③ 정부·민간 R&D 투자 등	중출원 성향국	▶ 심사관 교육, 공무원 지식재산 심화 교육 ▶ 국가 지식재산 전략 수립,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 기업 지식재산 컨설팅, 지식재산 실태조사
수원국 지식재산 인프라 현황		
① 산업재산권 전담부서 설치	고출원 성향국	▶ 지식재산 국제조약 가입 및 국내법 정비 ▶ 전략적 지식재산 정책 수립 ▶ 전자출원 및 특허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② 산업재산권 심사관 수		
③ 한국 출원인의 특허출원 건수		
④ 전자출원 및 정보시스템 수준		

우리나라의 對아프리카 IP-ODA 사업모델



1 아프리카 권역별 지식재산 활동 성향 분석

아프리카 지역은 최근 특허, 상표, 산업디자인 활동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건수에서 내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지 않다. 이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부분 농업과 광공업에 의존하고 있고 제조업 기반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데 기인한다.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의 특허 활동을 권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북부아프리카의 경우 이집트와 모로코가 상대적으로 특허 활동이 활발하고, 알제리, 리비아, 수단, 튀니지는 특허 활동이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특히 이집트는 관할청에 접수된 특허 출원 중 내국인의 출원 비중이 약 30~40%를 차지하여 내국인의 특허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알제리는 관할청에 접수되는 특허 출원이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리비아, 수단, 튀니지는 특허 출원 현황에 대한 데이터를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제대로 제출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 출원인은 북부아프리카에서 알제리, 이집트, 모로코에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특히 이집트에서 가장 많은 특허가 출원되어 매년 20~4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7〉 북부아프리카 지역 국가에서 접수된 특허 출원 건수¹¹⁹⁾

국가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알제리	출원 총계	638	710	849	1,118	2,009	35.6%
	내국인 출원	-	-	-	-	-	-
이집트	출원 총계	2,183	2,207	2,224	1,914	2,066	-1.0%
	내국인 출원	1,027	978	881	589	695	-7.5%
리비아	출원 총계	-	-	-	-	-	-
	내국인 출원	-	-	-	-	-	-

119) WIPO IP Statistics Data Center에서 다음의 검색 조건을 통해 추출 : Reporting type “Count by filing office and applicant’s origin” : Algeria, Egypt, Morocco, Libya, Sudan, Tunisia, Indicator “1-Total patent applications (direct and PCT national phase entries)”.

국가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모로코	출원 총계	2,730	2,688	2,803	2,913	2,802	0.7%
	내국인 출원	199	250	254	246	310	12.5%
수단	출원 총계	245	160	-	-	-	-
	내국인 출원	238	153	-	-	-	-
튀니지	출원 총계	-	-	-	366	-	-
	내국인 출원	-	-	-	200	-	-

사하라 이남 서부아프리카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들이 OAPI에 속해 있으며, 이들 국가는 별도로 국내 관할청을 두지 않고 OAPI가 산업재산권 출원 접수·심사를 총괄하기 때문에, 개별 국가 차원에서 특허 출원을 접수한 현황이 없다.

OAPI에 속해 있지 않는 국가들 중에서 나이지리아가 상대적으로 특허 활동이 활발하고, 카보베르데, 감비아, 가나,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은 특허 활동이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하지만 나이지리아도 특허 출원 현황에 대한 최근 데이터를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제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며, 서부아프리카에 속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유의미한 지식재산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3-18〉 사하라 이남 서부아프리카 지역 국가에서 접수된 특허 출원 건수¹²⁰⁾

국가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카보베르데	출원 총계	1	5	2	3	4	-
	내국인 출원	-	1	1	2	1	-
감비아	출원 총계	16	66	91	88	-	-
	내국인 출원	-	-	-	-	-	-
가나	출원 총계	-	20	-	21	20	-
	내국인 출원	-	12	-	7	6	-
라이베리아	출원 총계	-	-	-	212	158	-
	내국인 출원	-	-	-	-	-	-
나이지리아	출원 총계	1,122	1,008	-	-	-	-
	내국인 출원	439	410	-	-	-	-
시에라리온	출원 총계	5	4	-	-	-	-
	내국인 출원	-	-	-	-	-	-

120) WIPO IP Statistics Data Center에서 다음의 검색 조건을 통해 추출 : Reporting type “Count by filing office and applicant’s origin” : Benin, Burkina Faso, Cabo Verde, Côte d’Ivoire, Gambia, Ghana, Guinea, Guinea-Bissau, Liberia, Mali, Mauritania, Niger, Nigeria, Senegal, Sierra Leone, Togo, Indicator “1-Total patent applications (direct and PCT national phase entries)”.

OAPI 차원에서 접수된 특허 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OAPI에 속한 국가들의 특허 활동은 대체로 저조한 수준이다. 우선 OAPI는 매년 약 500~600건의 특허 출원을 접수하고 있고, 역내 국가들의 출원 건수는 아직 年 200건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최근 5년간 OAPI 역내 특허 출원이 연평균 약 20.9%의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세네갈, 카메룬, 코트디부아르를 제외하면, 대부분 회원국의 역내 출원은 年 10건 이하에 불과하고 코모로, 적도기니의 경우 역내 출원 사례가 없는 실정이다.

〈표 3-19〉 아프리카지식재산기구(OAPI)에서 접수된 특허 출원 건수¹²¹⁾

국가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OAPI	출원 총계	514	479	612	549	516	1.2%
	역내 출원	90	130	205	161	166	20.9%

한편, 사하라 이남 서부아프리카 지역 개별 국가에서 우리나라 출원인이 출원한 특허는 별도로 파악되지 않으며, 우리나라 출원인이 OAPI에 출원한 특허는 최근 5년 동안에 매년 5~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하라 이남 중부아프리카의 경우에도 대부분 국가들이 OAPI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개별 국가 차원에서 특허 출원을 접수한 현황이 없다. 중부아프리카에서 OAPI에 속해 있지 않는 국가들 중에 앙골라와 콩고민주공화국은 2010년대 후반까지 매년 약 100~200건의 특허 출원을 접수한 것으로 집계되지만 최근의 특허 출원 현황에 관한 데이터를 파악할 수 없다. 그리고 상투메프린시페의 경우 매년 접수되는 특허 출원이 10건 내외에 불과해 특허 활동이 매우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표 3-20〉 사하라 이남 중부아프리카 지역 국가에서 접수된 특허 출원 건수¹²²⁾

국가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앙골라	출원 총계	110	-	-	-	-	-
	내국인 출원	2	-	-	-	-	-
콩고민주공화국	출원 총계	132	182	-	-	-	-
	내국인 출원	42	72	-	-	-	-

121) WIPO IP Statistics Data Center에서 다음의 검색 조건을 통해 추출 : Reporting type “Count by filing office and applicant’s origin” : African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Indicator “1-Total patent applications (direct and PCT national phase entries)”.

122) WIPO IP Statistics Data Center에서 다음의 검색 조건을 통해 추출 : Reporting type “Count by filing office and applicant’s origin” : Angola, Cameroon, Central African Republic, Chad, Congo,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Equatorial Guinea, Gabon, Sao Tome and Principe, Indicator “1-Total patent applications (direct and PCT national phase entries)”.

국가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상투메프린시페	출원 총계	-	14	14	12	5	-
	내국인 출원	-	-	-	-	-	-

사하라 이남 동부아프리카의 국가들 중 코모로는 OAPI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개별 국가 차원에서 특허 출원을 접수한 현황이 없다. 동부아프리카의 경우 케냐가 매년 약 300~400건의 특허 출원을 접수하여 상대적으로 특허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파악된다.

에티오피아,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모잠비크, 르완다, 세이셸, 우간다, 잠비아 등 다른 북부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관할청에 접수되는 특허 출원이 연간 100건 이하로서 아직 특허 활동이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특히, 에리트레아, 말라위, 소말리아, 남수단, 탄자니아 등은 특허 출원 현황에 대한 데이터를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제대로 제출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우리나라 출원인은 동부아프리카에서 에티오피아, 케냐, 마다가스카르 등에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최근 5년 동안 이들 국가에 출원한 특허가 총 10건 이하에 불과하여 동부아프리카에서 우리나라 출원인의 특허 활동은 거의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3-21〉 사하라 이남 동부아프리카 지역 국가에서 접수된 특허 출원 건수¹²³⁾

국가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부룬디	출원 총계	15	7	4	2	1	-49.0%
	내국인 출원	-	2	-	1	-	-
지부티	출원 총계	-	5	13	7	-	-
	내국인 출원	-	-	3	-	-	-
에리트레아	출원 총계	-	-	-	-	-	-
	내국인 출원	-	-	-	-	-	-
에티오피아	출원 총계	-	60	-	64	82	-
	내국인 출원	-	6	-	16	44	-
케냐	출원 총계	335	376	197	417	409	18.6%
	내국인 출원	294	341	160	363	360	22.2%
마다가스카르	출원 총계	30	27	28	32	26	2.7%
	내국인 출원	-	6	6	8	2	-
말라위	출원 총계	-	-	-	-	-	-
	내국인 출원	-	-	-	-	-	-

123) WIPO IP Statistics Data Center에서 다음의 검색 조건을 통해 추출 : Reporting type “Count by filing office and applicant’s origin” : Burundi, Comoros, Djibouti, Eritrea, Ethiopia, Kenya, Madagascar, Malawi, Mauritius, Mozambique, Rwanda, Seychelles, Somalia, South Sudan, Uganda, United Republic of Tanzania, Zambia, Zimbabwe, Indicator “1-Total patent applications (direct and PCT national phase entries)”.

국가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모리셔스	출원 총계	27	25	20	8	17	6.3%
	내국인 출원	4	6	6	0	3	-
모잠비크	출원 총계	47	40	46	41	26	-11.8%
	내국인 출원	23	26	30	25	18	-4.1%
르완다	출원 총계	-	16	16	12	15	-
	내국인 출원	-	16	14	7	12	-
세이셸	출원 총계	12	12	28	25	15	20.7%
	내국인 출원	-	3	-	1	1	-
소말리아	출원 총계	-	-	-	-	-	-
	내국인 출원	-	-	-	-	-	-
남수단	출원 총계	-	-	-	-	-	-
	내국인 출원	-	-	-	-	-	-
우간다	출원 총계	15	19	18	11	-	-
	내국인 출원	14	13	14	10	-	-
탄자니아	출원 총계	-	-	-	-	-	-
	내국인 출원	-	-	-	-	-	-
잠비아	출원 총계	23	27	26	19	14	-9.9%
	내국인 출원	2	17	13	10	5	-
짐바브웨	출원 총계	-	-	-	41	32	-
	내국인 출원	-	-	-	33	27	-

사하라 이남 남부아프리카의 경우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최근 3년 동안 연 1만 건 이상의 특허 출원을 접수해 특허 활동이 매우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내국인의 특허 출원도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약 16.2%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보츠와나와 나미비아는 특허 활동이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파악되며, 레소토와 에스와티니는 특허 출원 현황에 대한 데이터를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제대로 제출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우리나라 출원인은 최근 3년 동안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매년 약 100건의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연평균 약 30% 증가율을 기록해 특허 출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3-22〉 사하라 이남 남부아프리카 지역 국가에서 접수된 특허 출원 건수¹²⁴⁾

국가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보츠와나	출원 총계	2	4	3	13	13	-
	내국인 출원	2	2	3	13	10	-
에스와티니	출원 총계	-	-	-	-	-	-
	내국인 출원	-	-	-	-	-	-
레소토	출원 총계	1	-	-	-	-	-
	내국인 출원	1	-	-	-	-	-
나미비아	출원 총계	20	-	-	32	61	-
	내국인 출원	8	-	-	16	61	-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원 총계	6,914	6,688	10,960	13,990	10,729	16.2%
	내국인 출원	567	542	1,804	1,651	413	36.2%

특허 출원 건수를 바탕으로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의 특허 활동 성향을 간략히 분석하면,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제외한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은 모두 내국인과 외국인의 특허 출원이 매우 저조한 저출원 성향국에 해당한다.

이를 다시 연간 특허 출원 건수가 1,000건 이상 5,000건 이하, 100건 이상 500건 이하, 1건 이상 100건 이하인 국가로 구분하여 상위·중위·하위 저출원 성향국으로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표 3-23〉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의 특허 출원 성향 구분

특허 출원 성향	국가 현황
중출원 성향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상위 저출원 성향국 (年 500건 이상 ~ 1,000건 이하)	알제리, 이집트, 모로코, 나이지리아
중위 저출원 성향국 (年 100건 이상 ~ 500건 이하)	수단, 튀니지, 라이베리아, 앙골라,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하위 저출원 성향국 (年 1건 이상 ~ 100건 이하)	카보베르데, 감비아, 가나, 베냉, 부르키나파소,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 가봉, 기니, 기니비사우, 말리, 모리타니, 니제르, 차드, 토고, 세네갈,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상투메프린시페, 에티오피아,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모잠비크, 르완다, 세이셸,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부룬디, 지부티, 보츠와나, 나미비아, 시에라리온
최하위 저출원 성향국 (특허 출원 없음)	리비아, 코모로,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말라위, 소말리아, 남수단,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레소토

124) WIPO IP Statistics Data Center에서 다음의 검색 조건을 통해 추출 : Reporting type “Count by filing office and applicant’s origin” : Botswana, Eswatini, Lesotho, Namibia, South Africa, Indicator “1-Total patent applications (direct and PCT national phase entries)”.

요컨대,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알제리, 이집트, 모로코, 나이지리아 이외에 내국인 출원을 포함한 특허 활동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그리고 연간 특허 출원 건수가 100건 이하로서 하위·최하위 저출원 성향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특허 활동을 위한 기반조치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2 수원국과의 지속가능한 파트너십 구축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은 특허 출원 성향이나 인프라 수준 등에 따라 지식재산 관할당국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특허 활동이 아직 저조한 대부분의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은 별도의 관할청을 두지 않고서 법무부, 경제산업부, 과학기술부 등이 산하 부서나 기관을 통해 산업재산권 심사·관리 업무를 함께 맡고 있다.

그리고 아프리카지식재산기구(OAPI)에 속해 있는 17개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은,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국내 지식재산 관할당국을 별도로 두지 않고 OAPI가 대리하여 회원국들의 산업재산권 심사·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의 지식재산 관할당국 및 산업재산권 법률 현황과 관련하여 북부아프리카와 사하라 이남 남부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북부아프리카 국가들은 산업재산권을 심사·관리하기 위한 법률을 시행하면서 이를 위한 관할당국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알제리는 산업부 국립산업재산협회(L'Institut National de la Propriété Industrielle)가 지식재산 정책 및 산업재산권 심사·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¹²⁵⁾ 알제리는 특허, 상표, 산업디자인 등 산업재산권별로 각각의 법률¹²⁶⁾¹²⁷⁾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지리적표시, 반도체 배치 설계에 관하여도 별도의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집트는 특허와 상표·산업디자인을 각각 다른 관할당국에서 담당하는데, 특허는 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tific Research) 과학기술원(Academy of Scientific Research and Technology) 산하의 특허청이 담당하고, 상표는 통상산업부(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무역진흥공사(Internal Trade Development Authority) 산하의 상표디자인청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

125) Marius Schneider & Vanessa Ferguson,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Africa', Oxford University Press(2020), p.58.

126) 알제리의 특허법(Ordinance No.03-07 of 19 Joumada El Oula 1424 corresponding to July 19, 2003, on Patents)의 원문은 다음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웹사이트를 참조 : <https://www.wipo.int/wipolex/en/legislation/details/1199> (2024년 12월 31일 최종방문).

127) 알제리의 상표법(Ordinance No.03-06 of 19 Joumada El Oula 1424 corresponding to July 19, 2003, on Trademarks)의 원문은 다음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웹사이트를 참조 : <https://www.wipo.int/wipolex/en/legislation/details/1197> (2024년 12월 31일 최종방문).

리고 이집트는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률¹²⁸⁾을 기본법으로서 제정·시행하면서 시행령과 규칙 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리비아는 교육과학부(Ministry of Higher Education and Scientific Research) 산하의 과학기술청(Libyan Authority for Research) 산업연구센터(Industrial Research Centre)가 산업재산권 심사·관리 업무를 담당한다.¹²⁹⁾ 리비아는 특허·산업디자인·실용신안 등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법률¹³⁰⁾을 통해 규정하고 있으며, 상표에 관하여는 상법의 일부로서 규정¹³¹⁾하고 있다.

모로코는 산업재산청(Moroccan Industrial and Commercial Property Office)이 별도로 설치되어 산업재산권 업무를 담당한다. 모로코는 산업재산 보호에 관한 법률¹³²⁾을 기본법으로 제정·시행하면서 특허,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상표, 지리적표시 등 산업재산권 업무를 관리하고 있다.

수단은 지식재산 등록국(Registrar General of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을 설치해 산업재산권 심사·등록 업무를 처리한다. 그리고 수단은 특허, 상표, 산업디자인 등 산업재산권별로 각각의 법률¹³³⁾¹³⁴⁾¹³⁵⁾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튀니지는 산업광업자원부(Ministry of Industry, Mines and Energy) 산하 국립표준화지식재산협회(National Institute for Standardization and Industrial Property)에서 산업재산권 심사·등록 업무를 담당한다. 그리고 튀니지는 수단 등과 유사하게, 특허, 상표, 산업디자인 등 산업재산권별로 각각의 법률¹³⁶⁾¹³⁷⁾¹³⁸⁾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반도체 배치설계에 관하여도

128) 이집트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률(Law No.82 of 2002 on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의 원문은 다음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웹사이트를 참조 : <https://www.wipo.int/wipolex/en/legislation/details/22066> (2024년 12월 31일 최종방문).

129) Marius Schneider & Vanessa Ferguson,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Africa', Oxford University Press(2020), p.454.

130) 리비아 특허·산업디자인·실용신안 등에 관한 법률(Law No.8 of 1959 on Patents and Industrial Designs and Models)의 원문은 다음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웹사이트를 참조 : <https://www.wipo.int/wipolex/en/legislation/details/10147> (2024년 12월 31일 최종방문).

131) 리비아의 상표에 관한 법률(Law No.23 of 2010 on Commercial Activities)의 원문은 다음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웹사이트를 참조 : <https://www.wipo.int/wipolex/en/legislation/details/16462> (2024년 12월 31일 최종방문).

132) 모로코의 산업재산 보호에 관한 법률(Law No.17-97 on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의 원문은 다음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웹사이트를 참조 : <https://www.wipo.int/wipolex/en/legislation/details/19767> (2024년 12월 31일 최종방문).

133) 수단의 특허법(Patents Act, 1971 (Act No.58 of 1971)) 원문은 다음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웹사이트를 참조 : <https://www.wipo.int/wipolex/en/legislation/details/10797> (2024년 12월 31일 최종방문).

134) 수단의 상표법(Trade Marks Act, 1969 (Act No.8 of 1969)) 원문은 다음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웹사이트를 참조 : <https://www.wipo.int/wipolex/en/legislation/details/10785> (2024년 12월 31일 최종방문).

135) 수단의 산업디자인법(Industrial Designs Act, 1974 (Act No.18 of 1974)) 원문은 다음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웹사이트를 참조 : <https://www.wipo.int/wipolex/en/legislation/details/10800> (2024년 12월 31일 최종방문).

136) 튀니지의 특허법(Law No.2000-84 of August 24, 2000, on Patents) 원문은 다음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웹사이트를 참조 : <https://www.wipo.int/wipolex/en/legislation/details/3819> (2024년 12월 31일 최종방문).

137) 튀니지의 상표법(Law No.2001-36 of April 17, 2001, on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and Service Marks)

별도의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표 3-24〉 북부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식재산 관할당국 및 산업재산권 법률 현황

국가	지식재산 관할당국 및 산업재산권 법률
알제리	• Algerian National Institute of Industrial Property Ministry of Industry (INAPI) • Ordinance No.03-07 of 19 Joumada El Oula 1424 corresponding to July 19, 2003, on Patents • Ordinance No.03-06 of 19 Joumada El Oula 1424 corresponding to July 19, 2003, on Trademarks • Ordinance No.66-86 of 7 Muharram 1386 corresponding to April 28, 1966, on Industrial Designs • Ordinance No.76-65 of 18 Rajab 1396 corresponding to July 16, 1976, on Appellations of Origin
이집트	• Egyptian Patent Office, Academy of Scientific Research and Technology, Ministry of Scientific Research • Trademarks and Industrial Designs Office, Internal Trade Development Authority,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 Law No.82 of 2002 on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리비아	• Industrial Research Centre, Libyan Authority for Research, Ministry of Higher Education and Scientific Research • Law No.8 of 1959 on Patents and Industrial Designs and Models • Law No.23 of 2010 on Commercial Activities
모로코	• Moroccan Industrial and Commercial Property Office (OMPIC) • Law No.17-97 on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 Law No.25-06 on the Distinctive Signs of Origin and Quality of Foodstuffs and Agricultural & Fishery Products
수단	• Registrar General of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 • Patents Act, 1971 (Act No.58 of 1971) • Trade Marks Act, 1969 (Act No.8 of 1969) • Industrial Designs Act, 1974 (Act No.18 of 1974)
튀니지	• National Institute for Standardization and Industrial Property, Ministry of Industry, Mines and Energy • Law No.2000-84 of August 24, 2000, on Patents • Law No.2001-36 of April 17, 2001, on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and Service Marks • Law No.2001-21 of February 6, 2001 on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Designs

사하라 이남 남부아프리카 지역 국가의 경우에도 북부아프리카 지역과 유사하게 대부분의 국가들이 특허, 상표, 산업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업무를 규정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산

원문은 다음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웹사이트를 참조 : <https://www.wipo.int/wipolex/en/legislation/details/3832> (2024년 12월 31일 최종방문).

138) 튀니지의 산업디자인법(Law No.2001-21 of February 6, 2001 on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Designs) 원문은 다음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웹사이트를 참조 : <https://www.wipo.int/wipolex/en/legislation/details/3828> (2024년 12월 31일 최종방문).

업부, 법무부 등의 산하에 지식재산 관할당국을 운영하고 있다.

우선 보츠와나는 산업통상부(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산하 지식재산청(Companies and Intellectual Property Authority)이 산업재산권 업무를 담당한다. 그리고 보츠와나는 산업재산권법¹³⁹⁾을 기본법으로서 제정·시행하면서 특허, 상표, 산업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에스와티니는 통상부(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Trade) 산하의 지식재산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이 산업재산권 업무를 담당한다. 에스와티니는 특허와 상표에 대해 각각의 법률¹⁴⁰⁾¹⁴¹⁾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률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규칙, 규정 등을 통해 규율하고 있다.

레소토는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and Law) 산하 등록청(Registrar General's Office)이 산업재산권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레소토는 지식재산법¹⁴²⁾을 기본법으로 제정·시행하면서 시행령과 규칙 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나미비아는 통상산업부(Ministry of Industrialization and Trade) 산하의 지식재산청(Business and Intellectual Property Authority)이 산업재산권 관련 실무를 담당한다. 또한 레소토와 유사하게, 지식재산법¹⁴³⁾을 기본법으로 제정·시행하면서 시행령과 규칙 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산업통상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산하의 지식재산위원회(Companies and Intellectual Property Commission)가 산업재산 업무를 관리한다. 그리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특허, 상표, 산업디자인 등 산업재산권별로 법률¹⁴⁴⁾¹⁴⁵⁾¹⁴⁶⁾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식물품종에 관하여도 별도의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139) 보츠와나의 산업재산권법(Industrial Property Act)의 원문은 다음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웹사이트를 참조 : <https://www.wipo.int/wipolex/en/legislation/details/9602> (2024년 12월 31일 최종방문).

140) 에스와티니의 특허법(Patents Act, 2018)의 원문은 다음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웹사이트를 참조 : <https://www.wipo.int/wipolex/en/legislation/details/22484> (2024년 12월 31일 최종방문).

141) 에스와티니의 상표법(Trade Marks Act, 1981)의 원문은 다음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웹사이트를 참조 : <https://www.wipo.int/wipolex/en/legislation/details/3795> (2024년 12월 31일 최종방문).

142) 레소토의 지식재산법(Industrial Property Order, 1989)의 원문은 다음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웹사이트를 참조 : <https://www.wipo.int/wipolex/en/legislation/details/5874> (2024년 12월 31일 최종방문).

143) 나미비아의 지식재산법(Industrial Property Act, 2012 (Act No.1 of 2012))의 원문은 다음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웹사이트를 참조 : <https://www.wipo.int/wipolex/en/legislation/details/18241> (2024년 12월 31일 최종방문).

144)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특허법(Patents Act, 1978 (Act No.57 of 1978)) 원문은 다음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웹사이트를 참조 : <https://www.wipo.int/wipolex/en/legislation/details/6256> (2024년 12월 31일 최종방문).

145)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상표법(Trade Marks Act, 1993 (Act No.194 of 1993)) 원문은 다음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웹사이트를 참조 : <https://www.wipo.int/wipolex/en/legislation/details/4074> (2024년 12월 31일 최종방문).

146)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산업디자인법(Designs Act, 1993 (Act No.195 of 1993)) 원문은 다음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웹사이트를 참조 : <https://www.wipo.int/wipolex/en/legislation/details/13086> (2024년 12월 31일 최종방문).

〈표 3-25〉 사하라 이남 남부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식재산 관할당국 및 산업재산권 법률 현황

국가	지식재산 관할당국 및 산업재산권 법률
보츠와나	• Companies and Intellectual Property Authority (CIPA),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 Industrial Property Act • Industrial Property Regulations, 2012 (S.I. 70 of 2012)
에스와티니	•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Trade • Patents Act, 2018 • Trade Marks Act, 1981; The Trade Marks Regulation, 1989
레소토	• Registrar General's Office (RGO), Ministry of Justice and Law • Industrial Property Order, 1989 (Order No.5 of 1989, amended up to Act No.4 of 1997) • Industrial Property Regulations, 1989 (Legal Notice No.85 of 1989)
나미비아	• Business and Intellectual Property Authority (BIPA), Ministry of Industrialization and Trade (MIT) • Industrial Property Act, 2012 (Act No.1 of 2012) (Amended by Act No.8 of 2016) • Industrial Property Regulations (Regulations No.114 of 2018)
남아프리카공화국	• Companies and Intellectual Property Commission,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CIPC) • Patents Act, 1978 (Act No.57 of 1978, amended up to Act No.58 of 2002) • Trade Marks Act, 1993 (Act No.194 of 1993) • Designs Act, 1993 (Act No.195 of 1993, amended up to Act No.38 of 1997)

3 아프리카 지역별·국가별 맞춤형 IP-ODA 모델 시행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알제리, 이집트, 모로코, 나이지리아 이외에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은 대부분 내국인 출원을 포함한 특허 활동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그리고 연간 특허 출원 건수가 100건 이하로서 하위·최하위 저출원 성향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특허 활동을 위한 기반조치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리비아, 코모로, 소말리아 등 최하위 저출원 성향에 해당하는 국가들에 대하여는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모델이 설계·시행될 필요가 있다. 이들 국가들은 특히 내국인의 특허 출원 활동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심사관 교육, 산업재산권 법률 정비 등과 같이 국내 혁신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당장에 커다란 효과가 없으며, 혁신 사례 전파, 청소년·사업가 발명 교육 등 지식재산 인식 제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수원국의 발명가나 혁신가가 현지에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사업 환경이 미흡하기 때문에 산업재산권 국제출원, 특허기술 사업화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정책결정자를 위하여는 우리나라 특허제도 초기 단계의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유의미할 수 있다.

연간 특허 출원 건수가 100건 이하인 하위 저출원 성향 국가에 대하여도 최하위 저출원 성향 국가와 유사하게 공적개발원조(ODA) 모델을 설계·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수원국 관할

당국이 현지 지식재산 인식 제고 활동과 청소년·발명가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식재산 인력 양성 등 사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연간 특허 출원 건수가 100건 이상 500건 이하인 중위 저출원 성향 국가의 경우 현지 지식재산 인프라를 정비하고 산업 고도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 대하여는 산업재산권 법률 정비, 지식재산 국제조약의 가입, 지식재산 전략 수립, 산업 재산 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 자문 등의 공적개발원조(ODA) 모델을 설계·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연간 특허 출원 건수가 500건 이상 1,000건 이하인 상위 저출원 성향 국가의 경우에는 지식 재산 활동 인프라가 일정 수준으로 마련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따라 이들 국가에 대하여는 혁신 활동을 본격적으로 촉진하고 산업재산 실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모델을 설계·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표 3-26〉 특허 출원 성향에 따른 아프리카 지역 국가별 IP-ODA 모델(안)

특허 출원 성향	IP-ODA 사업내용	IP-ODA 모델(안)
상위 저출원 성향국	• 지식재산 인력 양성 • 지식재산 국제레짐 편입 • 지식재산 인프라 강화 • 지식재산 제도 정비	• 글로벌 기준에 따른 산업재산권 법률 정비 • 국제출원 활성화를 위한 국제조약 가입 • 심사관 교육, 공무원 지식재산 심화 교육 • 국가 지식재산 전략 수립 자문 • 산업재산 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 자문 등
중위 저출원 성향국	• 지식재산 인식 제고 • 지식재산 창출·발명 교육 • 지식재산 인력 양성 • 지식재산 국제레짐 편입 • 지식재산 인프라 강화 • 지식재산 제도 정비	• 혁신 사례 전파, 청소년·대학(원)생 지식재산 교육 • 발명가·사업가 지식재산 교육, 특허기술 사업화 교육 • 발명가·사업가 지식재산 교육, 특허기술 사업화 교육 • 글로벌 기준에 따른 산업재산권 법률 정비 • 국제출원 활성화를 위한 국제조약 가입 • 심사관 교육, 공무원 지식재산 기초 교육 • 국가 지식재산 전략 수립 자문 • 산업재산 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 자문 등
하위 저출원 성향국	• 지식재산 인식 제고 • 지식재산 창출·발명 교육 • 지식재산 인력 양성	• 혁신 사례 전파, 청소년·대학(원)생 지식재산 교육 • 발명가·사업가 지식재산 교육, 특허기술 사업화 교육 • 산업재산권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 자문 • 지식재산 교육 커리큘럼 및 프로그램 개발 • 지식재산 인력 양성 등
최하위 저출원 성향국	• 지식재산 인식 제고 • 지식재산 창출·발명 교육	• 혁신 사례 전파, 청소년·대학(원)생 지식재산 교육 • 발명가·사업가 지식재산 교육, 특허기술 사업화 교육 • 산업재산권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 자문 등

다만, 이러한 지식재산 공적개발원조(ODA) 모델은 특허 출원 성향에 따라 시의적절한 사업 모델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IP-ODA 사업을 설계·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수원국의 경제 발전 수준과 산업재산권 활동 성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수원국 지식재산 정책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지역 국가에 대해 IP-ODA를 추진할 시에 수원국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지원 사업을 결정·추진하는 데 있어서 고려할 수 있는 IP-ODA 사업 모듈을 수혜대상, 사업 기대효과 등을 고려해 제시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3-27〉 아프리카 지적재산 공적개발원조(IP-ODA) 사업 모델 구성(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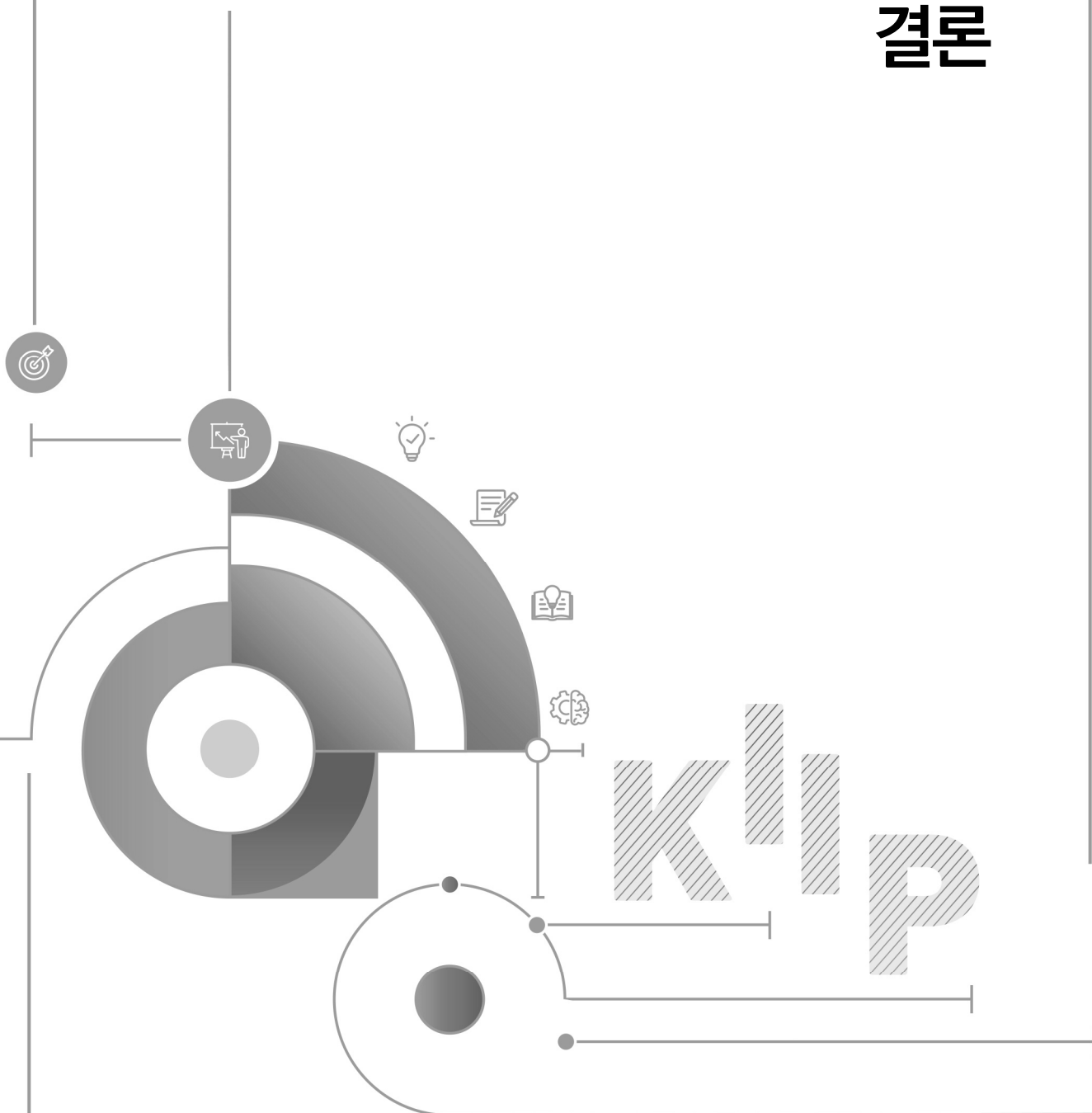
수혜대상	사업 모델	사업 모델 목표	사업 세부내용
지식재산 관련 정부기관 (행정·법률)	지식재산 행정 고도화 (심사 지원)	- 지식재산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 또는 선진화를 통한 행정비용 절감 및 행정처리 기간 단축 - 지식재산 출원 편의성 증대를 통한 지식재산 출원의 양적 확대 - 지식재산의 심사·심판·등록 체계 정비를 통한 행정처리 불확실성 해소와 품질 제고	- 지식재산 행정정보화 촉진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 지식재산 행정정보 시스템 개선 방안 컨설팅 - 지식재산 행정정보 운영·관리 방안 컨설팅 - 전자출원 시스템 도입 또는 활성화 방안 컨설팅 - 심사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방안 - 심사 지침서 및 매뉴얼 개발·활용 방안 컨설팅 - 심판 기준 정립 및 개선 방안 컨설팅 - 심사, 심판 품질 분석을 통한 품질 제고 방안 컨설팅 - 지식재산 출원료, 등록료,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 컨설팅
	지식재산 법제도 개선	- 지식재산 행정기관의 책임행정 강화 및 기관 운영의 자율성, 독립성 강화 -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촉진을 위한 정부의 기본 정책과 추진체계 마련 -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관련 법령 정비	- 특허청 등 지식재산 행정기관의 책임운영기관 전환 방안 - 지식재산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 수립 - 지식재산 정책 수립·점검·평가 절차 및 방법 컨설팅 - 지식재산 정책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 방안 - 지식재산 거버넌스 개선 방안 컨설팅 - 특허법 등 지식재산 법령의 국제 비교 및 법령 정비 - 산업재산 대리인 자격증 제도 도입 컨설팅
지식재산 관련 정부기관 (창출·활용)	연구개발 촉진	- 연구개발 활동과 특허 전략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특허 창출 확대 및 우수 특허 확보 - 지식재산 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및 성과평가 강화	- 국가연구개발 사업 기획 시 특허 동향조사 적용방안 컨설팅 - 지식재산 중심의 국가 R&D 관리 및 성과분석 체계 수립 - 연구개발과 지식재산에 관한 법률·제도 분석 및 개선 - 국가 R&D를 통한 우수 특허 창출 전략 컨설팅 - 지식재산 정보 검색 시스템 구축·서비스 방안 컨설팅
	지식재산 관련 정부기관 (창출·활용)	- 지식재산 전문 인력 자격 수립 및 전문 인력 육성 - 심사·심판 인력의 역량 강화 - 지식재산서비스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 연구인력, 기업 실무자 등 지식재산 업무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변리사 등 지식재산 전문 인력 자격 제도 운영 방안 컨설팅 - 지식재산 인력 양성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 고등교육기관을 통한 지식재산 교육 및 실무인력 양성 방안 - 단기 집체형 지식재산 실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심사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 심사 지침서 및 매뉴얼 개발·활용 방안 컨설팅 - 심판 기준 정립 및 개선 방안 컨설팅 - 심사, 심판 품질 분석을 통한 품질 제고 방안 컨설팅

수혜대상	사업 모듈	사업 모듈 목표	사업 세부내용
			- 지식재산서비스 직무분석 기반의 인력 양성 계획 수립 - 지식재산서비스 초급·전문 인력 양성 교육과정 개발 - WIPO 연계 교육프로그램 발굴 및 적용 방안 컨설팅 - 지식재산 정보 검색 시스템 구축·서비스 방안 컨설팅 -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거래 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운영 방안 컨설팅 - 지식재산 유형별 국제 분류체계의 국내 적용 방안 컨설팅 - 지식재산 정보의 관리·유통 전문기관 육성 방안 컨설팅 - 위조상품 신고센터 운영 등 위조상품 유통 방지 방안 수립 -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 권리 보호 및 권리구제 체계 구축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운영 방안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법제도 및 사법 서비스 개선 -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지식재산 정보화 (행정정보화 외)	- 지식재산 정보의 생산, 유통, 활용 촉진 - 지식재산 관련 통계 생산 및 활용 촉진	
	지식재산 권리 보호	- 지식재산 보호 집행력(법적·행정적 조치) 강화 -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 조치 강화	
	지식재산 중심 중소기업 지원	- 중소기업의 브랜드 개발 및 권리화 촉진 -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기술 보호 강화	- 중소기업 대상 지식재산 정보조사 서비스 - 중소기업 공동상표·브랜드 개발 지원 컨설팅 - 지식재산 중심의 중소기업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방안 - 단기 집체형 지식재산 실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운영 방안 -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및 권리구제 지원 체계 구축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	- 중소기업 특허출원 건수 및 출원인의 양적 확대 -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전략 도입 확대	- 중소기업 지식재산 창출·활용 촉진을 위한 조세 지원 방안 - 중소기업 기술 진단 매뉴얼 개발 및 후속 지원 방안 수립 -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 사업 개발 - 지식재산 정보 검색 시스템 구축·서비스 방안 컨설팅 - 혁신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개발 (시제품 제작, 우선구매 지원 등)
	지식재산 권리 보호	- 지식재산 보호 집행력(법적·행정적 조치) 강화 -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 조치 강화	- 위조상품 신고센터 운영 등 위조상품 유통 방지 방안 수립 -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 권리 보호 및 권리구제 체계 구축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운영 방안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법제도 및 사법 서비스 개선 -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수혜대상	사업 모듈	사업 모듈 목표	사업 세부내용
대학·연구기관	혁신 선도 연구기관 지원	- 지식재산 기반의 산학연협력 강화 - 대학·연구기관 특허출원 건수 및 발명자의 양적 확대	- 대학·기업·공공연구기관 등의 공동연구협력 가이드라인 구축을 통한 지식 재산권 소유와 활용 지원 컨설팅 - 연구노트 활용 등 연구개발 정보의 체계적 관리방안 컨설팅 - 지식재산 정보 검색 시스템 구축·서비스 방안 컨설팅 -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 사업 개발 - 고등교육 기관의 지식재산 교육 및 실무인력 양성 방안
	대학·연구기관 지식재산 경영	- 대학·연구기관 지식재산 관리·활용 역량 강화 - 대학·연구기관의 지식재산 경영전략 도입 확대	- 대학·연구기관 지식재산 관리·활용 전담조직 구축·운영 - 연구실 중심의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 개발·운영 컨설팅 - 대학·연구기관의 지식재산 진단 매뉴얼 개발 및 지원 방안 - 지식재산 중심의 연구개발 전략 도입 및 운영 컨설팅 - 국가 R&D를 통한 우수 특허 창출 전략 컨설팅
일반 국민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	- 지식재산 인식 제고 및 존중문화 조성 - 일반국민의 지식재산 접근성 강화	- 지식재산 존중 문화 조성 교육 홍보 콘텐츠 개발 및 활용 - 온라인을 통한 지식재산 기초교육 확대 방안 컨설팅 - 위조상품 신고센터 운영 등 위조상품 유통 방지 방안 수립 - 공익변리사 제도 운영 방안 컨설팅 - 지역 지식재산 창출·활용 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 방안
	지식재산 초·중등 교육	- 지식재산 교육 저변 확대를 통한 지식재산 교육 이수자 확대 - 초·중·중등 교육기관 지식재산 및 발명 교육 확대	- 온라인을 통한 지식재산 기초교육 확대 방안 컨설팅 - 초·중·중등 지식재산 교육 이수 체계 및 교육모듈 설계 - 청소년 발명교육 확대 및 발명교사 양성 방안 - 발명대회 및 지식재산 아카데미 운영 방안 컨설팅 - WIPO 연계 교육프로그램 발굴 및 적용 방안 컨설팅

제4장

결론



아프리카는 풍부한 자원과 내수시장, 노동인구 증가 등 잠재력 높은 신흥시장으로 평가되며 유럽,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은 이미 아프리카와 경제 협력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왔다. 우리나라는 2024년 6월에 처음으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포괄적인 경제협력 기반을 마련하였고, 경제협약의 초석으로서 2030년까지 對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ODA)를 100억 불, 수출금융을 140억 불로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아프리카는 산업 인프라와 법제도가 미흡해서 사업 환경 불확실성이 매우 크고, 특히 기술과 브랜드가 비즈니스 성패를 결정하는 시대에 지식재산 인프라도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다.

따라서 아프리카와 동반성장, 지속 가능한 경제협력을 위해선 현지 지식재산 인프라를 개선하려는 공감·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아프리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IP-ODA의 설계와 연속성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아프리카 IP-ODA는 궁극적으로 지식재산을 통해 수원국의 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최빈개도국 간의 지식재산 격차(disparity)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추진해 온 지식재산 부문 공적개발원조(ODA)는 정책적 우선순위가 낮고 예산 규모도 매우 작은 실정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가 추진한 지식재산 공적개발원조(IP-ODA)는 대부분 수원국의 일시적 수요를 반영해 단발성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짧은 사업기간 때문에 수원국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공적개발원조를 이행할 중점협력국을 선정하고 수원국별로 국가협력전략(CPS)을 수립·추진하는데, 이러한 중점협력국 중 아시아 국가는 약 44.5%, 아프리카 국가는 약 25.9%의 비중을 차지하여 아프리카에 대한 비중이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와 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동반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확대하면서 산업 발전 기반이 되는 혁신 시스템을 수원국에 구축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재산 공적개발원조(IP-ODA)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아프리카 국가들은 권역별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환경이 다르고 지식재산 인프라 수준과 특허 출원 성향도 매우 다르기 때문에, 수원국의 경제발전 수준 등을 고려해 수원국에 적합한 지식재산 공적개발원조(IP-ODA)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아프리카 지식재산 지역레짐과 국가별 특허출원 성향을 개략적으로 조사한 결과, 아프리카 국가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특허 출원 활동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최하위·하위 특허 출원 성향 국가들을 대상으로 IP-ODA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식재산 인식 제고,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산업재산 법률 정비 등 산업 기반 형성 단계에 적절한 사업을 설계·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IP-ODA를 추진할 수원국의 경제발전 전략과 지식재산 정책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지 지식재산 인프라에 대한 사전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수원국과 우리나라 모두에게 유의미한 사업을 계획·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전략 연구

아프리카 지역 지식재산 협력에 관한 연구 - IP-ODA 발굴 및 지식재산 지역학 기초연구 -

발 행 일 2024년 12월
발 행 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발 행 인 최 규 완
주 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3, 9층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전 화 02-2189-2600
홈 페이지 www.kiip.re.kr
디자인/인쇄 (주)케이에스센세이션 02-761-0031

이용허락 유형	표시 마크	이용허락 범위
[제4유형] 제1유형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 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미래전략 연구

아프리카 지역 지식재산 협력에 관한 연구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대전 서구 청사로 189
Tel. 1544-8080 Fax. 042)472-3464
<http://www.kipo.go.kr>



한국지식재산연구원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Tel. 02)2189-2600 Fax. 02)2189-2698
<http://www.kiip.re.kr>

ISBN : 979-11-6884-250-2

DOI : 10.8080/P9791168842502